**중화인민공화국 위험화학품안전법**

**(의견 수렴안)**

(**비고 :** **굵게 표기한** 부분은 <위험화학품안전관리조례>의 기초에서 증가된 내용임)

# 제1장 총칙

1. 위험화학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험화학품 사고를 예방 및 감소시키며 **국민 우선, 생명 우선 원칙을 견지하고 국민의 생명 안전과 신체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위험화학품 안전생산관리체계와 관리능력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2. 위험화학품 생산, **저장**, 사용, 경영, 운송 및 폐기 처분의 안전관리는 본**법**을 적용한다.

폐기위험화학품의 처리는 환경보호 관련 법률, 행정 법규와 국가의 관련 규정이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 **그 규정을 적용한다**.

1. 본**법**에서 위험화학품이라 함은 독해, 부식, 폭발, 연소, 조연 등의 성질을 가지고 인체, 시설, 환경에 해를 끼치는 극독화학품 및 기타 화학품을 가리킨다.

**국가는 위험화학품에 대해 목록관리를 실시한다**. 위험화학품목록 및 위험화학품 확정 원칙은 국무원 응급관리부서가 국무원 공업정보화, 공안, **생태**환경, 위생**건강**， **시장감독관리**， 교통 운송, 농업 **농촌,** **세관** 주관부서와 함께 화학품 위험 특성의 **감정**, 분류 기준**과 국가 안전 관리의 실제 필요**에 따라 확정하여 공포하고 적시에 조정한다.

1. 위험화학품 안전관리는 반드시, **업계 관리주체는 반드시 안전을 관리, 업무 관리주체는 반드시 안전을 관리, 생산경영 관리주체는 반드시 안전을 관리하는 것을 견지해야 하고,** 안전제일, 예방 위주, 종합관리의 방침을 견지해야 하며, **주관자가 책임을 부담하고, 심사 비준자가 감독 관리하며, 건설자가 책임을 부담 하는 것을 견지해야 하고,** 위험화학품을 생산, **저장**, 사용, 경영, 운송 및 **폐기처분**하는 단위[[1]](#footnote-1)(이하 “위험화학품단위”라 총칭함)의 주체적 책임**과 해당 지역 속지관리책임을 강화 및 실현하고 생산경영단위 책임 부담, 직원 참여, 정부 감독관리, 업계 자율 및 사회 감독의 매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위험화학품단위**는 **전체 인원 안전생산책임제를 실시**해야 하고, **안전리스크통제와 잠재 위험 요소 제거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생산 표준화 등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며, 종사자(从业人员)에 대한 안전생산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 본질적으로 안전 수준을 높여야 하며, 그** 주요 책임자는 본 단위의 위험화학품 안전생산작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책임을 진다. **위험화학품 생산 장치를 구비하고 저장 시설을 구비하며 중대 위험원을 구성하는 위험화학품 단위와 위험화학품 운송 기업은 안전생산 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위험화학품단위는 법률·행정법규 규정과 국가기준, 업계기준상 요구되는 안전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안전관리규장제도와 직무 안전**생산**책임제도를 수립 및 보완하며, 법에 따라 **안전생산관리기관을 설치하고 안전관리원을 배치해야 하고, 안전생산 교육과 훈련 계획을 수립 및 실현하여야 하며**, 종사자에게 안전교육, 법제 교육 및 직무**기능**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종사자는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하고, 평가를 거쳐 합격 후 임직, 작업할 수 있으며, 자격 요구가 있는 직무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상응한 자격을 취득한 인원을 배치해야 한다.

1. 어떠한 단위나 개인은 국가가 생산**·저장·**경영**·**사용**·운송**을 금지하는 위험화학품을 생산**·저장·**경영**·**사용**·운송**해서는 아니 된다.

국가가 위험화학품의 사용에 대해 제한성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제한성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화학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관련 기업, 사업단위[[2]](#footnote-2)가 과학연구 등의 원인으로 국가가 사용을 제한하는 위험화학품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국가의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집행해야 한다.**

**국가가 생산, 저장, 경영, 사용, 운송을 금지 및 제한하는 위험화학품목록은 국무원 공업정보화부서, 교통운송부서가 기타 관련 부서와 연합하여 제정, 공포한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는 현지 실제 상황과 결부하여 본 지역의 생산, 저장, 경영, 사용을 금지 및 제한하는 위험화학품목록을 제정할 수 있으나, 국제 운송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

1.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반드시 위험화학품 안전업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본 지역의 안전생산책임제와 속지관리책임을 실행해야 하며, 중대 안전 리스크를 예방 및 해결하고, 안전발전 수준을 전면적으로 제고해야 한다.**

위험화학품의 생산·**저장**·사용·경영·운송 **및 폐기 처분**에 대해 안전감독관리를 실시하는 관련 부서(이하 총칭하여 “위험화학품 안전감독관리 책임부서”라 함)는 다음 규정에 의거하여 직책을 수행한다.

(1) **응급관리**부서가 위험화학품목록의 확정, 공포, 조정을 책임지고 **법에 따라** 위험화학품(장거리 도관을 사용하여 운송하는 위험화학품 포함, 하동) 생산, 저장의 신축, 개조, 증축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안전심사(**심사내용에는 안전 요건과 안전시설 설계가 포함됨)를 진행하고, 위험화학품안전생산(안전사용과 안전경영 포함)허가증을 확인 및 발급하거나 비안관리를 실시하며, 위험화학품 등기 업무를 책임지고, 위험화학품 사고 응급처리를 조직하며, 기타 위험화학품 안전생산감독관리 직책이 있는 부서를 협력 지도, 검사 독촉, 평가 순찰하여 법에 따라 위험화학품 안전생산감독관리직책 등** 위험화학품 안전감독관리 종합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2) 공안기관은 위험화학품의 공공 안전관리와 **폭발물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위험화학품(이하 “폭발물 제조용 위험화학품”이라 약칭)과 극독화학품의 행방(流向)에 대한 감독관리를 책임지고**, 극독화학품 구매 허가증과 극독화학품 도로 운송 통행증을 심사발급하며, 위험화학품 운송차량의 도로 교통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위험화학품 도로 교통사고 현장에 대한 외곽교통 통제를 실시한다**.

(3) **시장감독관리**부서는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목록에 수록되어** 관리되는 위험화학품 및 그 포장물과 용기(위험화학품을 **저장**하는 고정식 대형 저장 탱크를 포함하지 않음, 하동) 생산기업의 공업제품 생산허가증의 심사발급을 책임지고, 법에 따라 그 생산기업의 **점검 검사** 및 제품 품질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하며 **위험화학품의 압력 배관과 압력 용기의 설치, 사용과 점검, 검사에 대한 감독관리 실시를 책임지고, 위험화학품 생산·저장·경영·사용·저장·운송과 위험화학품 폐기처분(위험폐품 중간 저장, 위험폐품 처리 포함) 기업에 영업허가증을 심사발급하고 각종 시장 주체의 위험화학품 불법 경영 행위를 조사처리한다.**

(4) **생태환경주관부서**는 위험화학품 폐기처분 절차에 관한 **안전**감독 **책임**을 지고, 위험폐기물의 수집**·**저장**·**처리 등에 대해 법에 따라 감독관리를 실행하며, 직책 분공에 따라 관련 위험화학품 환경오염사고와 생태파괴사건을 조사하고, 위험화학품 사고현장의 응급환경 모니터링을 책임진다.

(5) 교통**운송**주관부서는 위험화학품의 도로 운송과 수로 운송의 허가 **또는 비안** 및 운송 도구(위험화학품 운송 차량에 대한 세척 등 작업 포함), **하역작업**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며, **항구 내 위험화학품의 저장, 하역 및 창고 저장을 경영하는 항구 기업의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위험화학품의 수로 운송 안전에 대해 감독을 실시하며, 위험화학품 도로 운송 기업과 수로 운송 기업의 운전자, 선원, 하역 관리원, 호송 인원, 신고 인원, 컨테이너 포장 현장 검사원의 자격 인정을 책임지며, 철도관리부서는 위험화학품의 철도 운송 및 그 운송 도구의 안전 **감독** 관리를 책임지고, 민용항공부서는 위험화학품의 항공 운송 및 항공 운송 기업과 그 운송 도구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며, 우편 관리부서는 위험화학품의 배송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법에 따라 위험화학품 불법 배송 행위를 단속한다.

(6) 위생**건강**부서는 **그가 주관하는 의료위생기관의 위험화학품 저장, 사용에 대한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위험화학품 사고 부상자의 의료위생 구조 업무를 조직 및 조율할 책임이 있다.

(7) **자연자원부서는 위험화학품 건설 프로젝트가 소재한 화학공업단지, 위험화학품을 저장하는 집중구역과 주변 안전 통제 거리 등 관련 내용을 현지 국토 공간 규획에 포함시키고, 실시를 감독할 책임이 있다**.

(8) 공업정보화부서는 위험화학품 업계 발전 규획을 수립 및 실시하고, 국가가 생산, 저장, 경영, 사용을 금지 및 제한하는 위험화학품목록 및 화학공업단지의 설립 및 그 건설기준, 단지 입주 조건과 관리방법을 제정하고, 생산공정과 생산능력이 낙후하고 리스크가 높은 위험화학품 기업의 퇴출을 추진할 책임이 있다.

(9) 주택성향건설부서(住房城乡建设)는 위험화학품 건설 프로젝트의 공사 품질, 소방 시설 설계 심사, 시공과 검수의 안전을 책임지고, 위험화학품 관련 공사 건설 국가 기준을 제정할 책임이 있다.

**(10) 세관주관부서는 위험화학품을 수출입하는 항구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위험화학품 및 그 포장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책임이 있다.**

**(11) 기타 부서들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관련 업계 분야의 위험화학품에 대해 안전생산 감독관리 직책을 수행한다.**

1. 위험화학품 안전감독관리 책임부서는 법에 따라 감독검사를 실시하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1) 위험화학품 작업 장소에 진입하여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관련 단위와 인원으로부터 상황을 파악하며 관련 문서, 자료를 조회 및 열람, 복사하며 **필요시 위험화학품에 대한 샘플링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위험화학품의 **안전과 환경 관련** 잠재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즉시 제거하거나 기한 내에 제거하도록 명령한다.

(3) 법률, 행정법규, 규장 규정 또는 국가기준, 업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 설비, 장치, 기자재, 운송 도구에 대해서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을 명령한다.

(4) 위험화학품을 불법으로 생산·**저장**·사용·경영하거나 **폐기 위험화학품 처리** 장소를 봉인하고 불법으로 생산, 저장, 사용, 경영, 운송한 위험화학품과 위험화학품을 불법으로 생산, 사용, 운송하는데 사용된 원자재, 설비, 운송 도구를 압류한다.

(5) 위험화학품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현장에서 바로 시정하도록 명하거나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6) **법에 따라 기타 부서에서 처리해야 할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기타 부서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서면 기록을 잘 작성해야 한다.**

위험화학품 안전감독관리 책임부서는 법에 따라 감독관리를 진행하고 감독검사 인원은 2명 이상이어야 하며 조사관증(执法证件)을 **제시해야** 하며, 관련 단위와 개인은 법에 따라 진행하는 감독 검사에 협조해야 하고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1.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는 반드시 위험화학품 안전감독관리 업무조율 매커니즘을 수립하여 위험화학품 안전감독관리 책임부서가 법에 따라 직책을 이행하도록 지지 및 독촉하며, 위험화학품 안전감독 관리업무 중의 중대 문제를 조율, 해결해야 한다.

위험화학품 안전감독관리 책임부서는 상호 협조하고, 긴밀하게 협력해야 하며, **정보 공유**를 통해 법에 따라 위험화학품에 대한 안전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1. 어떠한 단위나 개인은 본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위험화학품 안전감독관리 책임부서에 제보할 권리가 있다. 위험화학품 안전감독관리 책임부서는 제보를 받고 즉시 법대로 처리해야 하며, 본 부서의 직책에 속하지 않는 부서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에 따라 제보자에게 알리거나** 즉시 관련 부서로 이송하여 처리해야 하고, **관련 부서는 반드시 이를 접수 및 적시에 처리해야 한다.**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위험화학품 불법행위 제보 장려 제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보자, 특히 내부 제보자가 소속 단위의 불법 행위를 제보하고 조사 결과 사실임이 확인되는 경우 상여해야 하고 또한 제보자의 정보를 엄격히 보호해야 한다.**

1. **국무원 공업정보화부서는 국무원 관련부서와 함께 위험화학품 정보관리 시스템을 수립하고, 위험화학품에 대해 전자 식별과 전반 수명주기 내의 정보화 관리를 실시한다.**
2. 국가는 위험화학품 생산, **저장**, 사용, **경영, 운송, 폐기 처분** 기업이 **본질안전과** 안전보장 수준 제고에 유리한 선진 기술, 생산공정, 설비 및 자동제어시스템을 채택하도록 장려하고, 위험화학품에 대해 전문 **저장**, 일괄 배송, 집중 판매를 실시하도록 장려한다.
3. **위험화학품을 생산, 저장, 사용하는 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위험화학품의 중대 위험원(危险源)을 등기 및 파일링해야 하고 정기 검사, 평가,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응급대비책을 마련하고 안전모니터링경보시스템을 구축하며 중대 위험원 및 관련 안전조치, 응급조치를 관련 지방 인민정부가 주관하는 위험화학품 안전생산감독관리 책임부서에 비안(备案)해야 한다.**

**위험화학품 안전생산감독관리 책임부서는 안전 리스크모니터링경보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위험화학품의 중대 위험원을 단계별, 유형별로 정기적으로 전문 감시하고, 사고의 잠재 요인을 즉시 제거하여 특대형 사고의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1. **각급 인민정부는 위험화학품 안전생산업무에 대하여 뛰어난 성과를 취득한 단위, 업계 조직 및 개인에 대하여, 장려한다.**

# 제2장 등기와 감정

1. 국가는 위험화학품 등기제도를 실행하고, **위험화학품 확정원칙에 부합하는 화학품을 등기**하며, 위험화학품 안전관리 및 위험화학품 사고예방과 응급구조에 대한 기술, 정보 지원을 제공한다.

**국가는 연구개발, 테스트성 생산과 판매, 소량, 소량 방출과 소량 노출, 폴리머 등 위험화학품에 대한 등기는 면제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응급관리부서가 국무원 공업정보화, 공안, 생태환경, 위생건강, 농업농촌 등 부서와 연합하여 확정 발표하고 적시에 조정한다.**

1. 위험화학품 생산기업, 수입기업은 국무원 **응급관리**부서의 위험화학품 등기를 책임지는 기관(이하 “위험화학품 등기기관”)에 위험화학품 등기를 해야 한다.

위험화학품 등기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1) 분류 및 라벨 정보.

(2) 물리적, 화학적 성질.

(3) 주요 용도.

(4) 위험 특성.

(5) **저장**, 사용, 운송, 폐기 처분의 안전 요구.

(6) 위험 상황 발생 시 응급처리조치.

동일 기업이 생산 및 수입한 동일 품종의 위험화학품에 대해서는 중복 등기를 하지 않는다. 위험화학품 생산기업, 수입기업이 그가 생산, 수입한 위험화학품의 새로운 위험 특성 **또는 등기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적시에 위험화학품 등기기관에 등기 내용 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위험화학품 등기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응급 관리부서**가 제정한다.

1. **화학품의 위험 특성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 국무원 응급관리부서, 국무원 생태환경주관부서, 국무원 위생주관부서가 각각 위험화학품 분류 감별기관을 조직하여 해당 화학품의 물리적 위험성, 환경 위해성, 독리 특성을 감정한다. 감정 결과에 따라 위험화학품목록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위험화학품 분류 감별기관은 국가가 규정한 상응한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감정 결과에 따라 위험화학품에 속하는 경우, 본 법에 따라 등기하고 관리해야 한다. 위험 특성이 위험화학품목록에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경우 국무원 응급관리부서에 서면으로 적시에 보고해야 한다.**

**위험화학품 생산기업, 수입기업은 그가 생산, 수입한 위험 특성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화학품에 대해 감정을 진행해야 한다.**

**세관주관부서는 위험 특성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화학품을 발견하면, 관련 단위의 통관 신청을 거절하고, 즉시 동급 응급관리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화학품의 위험 특성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 **기업은 함부로 생산, 경영, 저장, 사용, 운송 등 활동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험화학품 등기기관은 **위험화학품 등기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위험화학품 관리정보시스템에 포함시키고 공안**, 공업정보화, **자연자원, 생태**환경, 위생**건강**, 교통운송, **농업농촌, 자연자원, 세관, 시장감독관리** 등 부서에 **위험화학품 등기정보 데이터베이스 조회기능을 개방하고 이미 등기된 위험화학품 안전기술 설명서 관련 정보와 응급상담전화를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2. 위험화학품 생산 기업, **수입 기업**은 그가 생산, **수입**한 위험화학품에 부합하는 **중문** 화학품 안전기술설명서를 제공하고 위험화학품 포장(외포장 포함)에 포장 내의 위험화학품과 일치한 화학품 안전 라벨을 부착 또는 달아야 한다. 화학품 안전기술 설명서와 화학품 안전 라벨에 기재된 내용은 국가 기준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위험화학품 **생산 기업, 수입 기업**이 그가 생산 **또는 수입**한 위험화학품의 새로운 위험 특성을 발견하면 즉시 공시하고 그 화학품 안전기술 설명서와 화학품 안전라벨을 적시에 수정하여야 한다.

# 제3장 규획 배치

1. 국가는 **국무원발전개혁부서, 공업정보화부서, 자연자원부서, 생태환경주관부서, 주택성향건설부서와 응급관리부서로 구성된 국가화공산업발전규획편성 의사소통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위험화학품의 생산**저장**에 대해 통일된 규획과 합리적 배치를 실시한다.

국무원 공업정보화부서 및 국무원 기타 관련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근거하여 위험화학품 생산, **저장** 관련 **산업 규획**과 **구역 분포**배치를 **제정시** **안전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주도 산업(产业定位), 규획 배치, 경제 규모, 기업 진입 조건 등에 대해 조치성 건의를 제기해야 한다.**

지방인민정부는 **국토공간규획** 수립 시 해당 지역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안전확보 원칙에 따라 위험화학품의 생산, **저장**에 전문 사용될 수 있도록 적절한 구역을 규획해야 하고 **주변 건축물, 구조물과 국가 규정에 부합하는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저장** 수량이 중대 위험원을 이루는 위험화학품 **저장** 시설의 주소 선정 시, 지진 활동 단층이나 홍수, 지질 재해가 발생하기 쉬운 지역을 피해야 한다.

1. **화학공업단지는 국가, 지역, 성 및 구(區)를 설치한 시(市)급 인민정부 화공산업 발전규획 요구에 부합해야 하고, 국토공간규획의 관련 요구사항에 부합해야 한다**.

**화학공업단지의 설립은 안전리스크 평가보고서, 규획환경 영향 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응급대비책을 작성하여 관리권한에 따라 국무원이나 성(省)급 인민정부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화학공업단지는 위험화학품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단지 내 기업, 중점 장소, 중대 위험원, 기초시설에 대한 리스크 모니터링 조기경보를 실시해야 한다. 화학공업단지의 건설 기준, 인정 조건과 관리방법은 국무원 공업정보화부서가 국무원 관련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1.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녹색 발전, 안전 발전, 고품질 발전의 요구에 따라 과학적인 규획, 집중적인 배치, 합리적인 배치, 산업 연관, 기초시설과 공용공정(公用工程)의 유기적인 배치의 원칙에 따라 법에 따라 화학공업단지를 규획하고 건설해야 한다.**

**신규 위험화학품 생산 건설 프로젝트는 화학공업단지에 입주해야 해야 한다. 다만, 자원류와 기타 업종을 위한 위험화학품 건설 프로젝트는 제외된다.**

1. **구(区)가 설치된 시급 인민정부는 5년마다 적어도 본 지역의 화학공업단지에 대해 안전위험평가와 규획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수용불가한 리스크가 발견되면 즉시 조치를 취하여 리스크를 줄이고 해당 지역의 안전리스크가 수용할 수 있는 정도를 유지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화학공업단지 내 위험화학품의 품종, 수량, 배치 등에 변화가 발생하여 **화학공업단지 리스크통제조건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 화학공업단지 안전리스크평가와 규획환경 영향평가를 즉시 조직하고 관련 응급대비책을 수정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공업정보화부서, 생태환경주관부서에서 각각 제정한다.**

1. **화학공업단지는 도시구역, 인구밀집장소, 중요 시설, 민감 목표 등과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 기준에 부합되는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화학공업단지 안전생산관리기구는 화학공업단지의 전반적인 안전리스크 평가 결과와 관련 법규 기준상의 요구에 따라 화학공업단지 주변 토지에 대한 안전제어선을 규획하고 화학공업단지 소재지의 자연자원부서, 응급관리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자연자원부서는 관련 내용을 국토공간 규획에 포괄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화학공업단지가 소재하는 구(区)를 설치한 시급(设区的市级) 및 현급 지방인민정부의 자연자원부서는 화학공업단지 주변 토지규획 안전통제선 내의 토지개발 이용을 엄격히 통제해야 하고, 토지규획 안전통제선 범위 내의 개발 건설 프로젝트는 안전리스크평가를 거쳐 안전리스크 통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교통운송 주관부서는 위험화학품 운송에 대한 안전 보장을 강화하고, 위험화학품의 저장, 하역, 운송과 관련된 물류단지, 집중주차구역 및 고속도로 휴게소의 주유(가스)소, 위험화학품 차량 임시주차구역 등을 규획해야 한다.**
2. 위험화학품 생산 장치 또는 **저장** 수량이 중대 위험원을 구성하는 위험화학품 **저장**시설과 다음 장소, 시설, 구역과의 안전**거리**는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1) 거주지역 및 상업센터, 공원 등 인구가 밀집된 장소.

(2) 학교, 병원, 극장, 체육장(관) 등 공공시설.

(3) 상수도 수원진(饮用水源), 정수처리공장(水厂) 보호 구역.

(4) 정류장, 부두(법에 따라 허락을 받고 위험화학품 하역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제외), 공항 및 통신 간선, 통신 허브, 철도 노선, 도로 교통 간선, 수로 교통 간선, 지하철 풍정 및 지하철 역 출입구.

(5) **생태보호 레드라인, 영구**기본농지, 기본 초원, 가축유전자보호구, 가축 규모화 양식장(양식 단지), 어업수역 및 종자, 종가축, 수산묘종생산기지, **야생동물 중요 서식지.**

(6) 하천, 호수, **저수지, 자연 보호지.**

(7) 군사 금지 구역, 군사 관리 구역.

(8) 법률, 행정 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장소, 시설, 구역.

이미 건설된 위험화학품 생산 장치나 저장 수량이 중대 위험원을 구성하는 위험화학품 저장시설이 전항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소재지의 구를 설치한 시급인민정부의 공업정보화부서, 응급관리부서가 관련 부서와 함께 그 소속 단위가 기한 내에 정비 개조하도록 감독하고, 생산 전환, 생산 중단, 이사, 폐쇄가 필요한 경우, 본급 인민정부가 결정 및 조직하여 실시한다.

# 제4장 생산과 저장 안전

1. **위험화학품 생산·저장의 신축, 개조, 증축 건설 프로젝트(이하 “위험화학품 건설 프로젝트”)의 안전시설은 반드시 주체 공정과 동시에 설계하고, 동시에 시공하며, 동시에 생산 및 사용에 투입되어야 한다. 안전시설 투자는 반드시 건설 프로젝트의 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2. **위험화학품 건설 프로젝트 안전시설의 설계단위와 그 설계자들은 안전시설 설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위험화학품 건설 프로젝트의 안전시설 설계는 안전을 보장하는 조치적인 건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단위는 국가의 건설공정 안전관련 기준 및 관련 부서의 심사를 거친 안전시설 설계에 따라 시공하고 공정 품질과 시공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공정감리를 실시하는 위험화학품 건설 프로젝트일 경우 건설단위는 안전시설의 시공안전에 대한 감리를 함께 위탁해야 한다.

**건설단위는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점검에 합격해야만 생산과 사용에 투입할 수 있다.**

1. 위험화학품 생산, **저장의** 신축， 개조, 증축 건설 프로젝트는 **응급관리**부서가 안전 심사를 해야 한다

건설단위는 국가가 규정한 자질 요건을 갖춘 기관에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안전평가를 의뢰하고, 안전평가 상황을 건설 프로젝트 소재지 구를 설치한 시급 이상 인민정부의 **응급관리**부서에 보고하고, **응급관리**부서는 보고 받은 날로부터 **20 영업일** 이내에 심사결정을 내려 건설단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응급관리**부서가 제정한다.

**항구, 철도에서의** 위험화학품 저장·하역의 신축, 개조, 증축 건설 프로젝트는 항구, 철도 행정관리 부서에서 **각각** 안전 요건을 심사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항구 행정 관리 부서, 철도 관리감독부서에서 각각 제정한다.**

1. 위험화학품 생산, 저장 기업은 안전리스크 연구 판단 및 확약 공고 제도를 수립하여 자사에 존재하는 안전리스크를 확인하고 안전리스크 등급별 관리 및 안전통제 조치를 실시하며 사회에 공개적으로 확약 및 공고를 해야 한다.

**위험화학품 생산, 저장 기업의 생산공정, 시설, 설비, 원료 등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할 경우 안전리스크평가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

**위험화학품 단위는 반드시 기술 개조를 통해 낙후한 생산능력을 도태시키고 국가가 명시적으로 도태시킨 안전생산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하는 생산공정, 기술 및 그 설비 시설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구체적인 목록은 국무원 응급관리부서가 국무원 관련부서와 연합하여 제정, 공포한다.**

1. **위험화학품 생산, 저장 기업은 반드시 생산공정 조작, 특수 작업, 시설 운행-정지 및 정비-수리 등 모든 생산 작업 단계에 대해 과정안전관리제도(过程安全管理制度)를 수립하여 책임자, 직무 직책과 조작 규정을 명확히 하고, 효과적인 실시를 조직하고 과정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2. **위험화학품 생산, 저장 단위가 공공 지역에 매설, 지면에 가설, 부설된 위험화학품 운송 배관 및 그 부속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는 반드시 법률, 행정법규와 국가 기준 또는 업계 기준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광가스, 염소가스 등 극독 위험화학품 배관이 공공 구역을 가로 지나는 것(穿越)(또는 공중에 가설하여 가로 지나는 것, 跨越)을 금지한다.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 유독성 가스 위험화학품 배관이 공공지역을 가로 지나는 것(또는 공중에 가설하여 가로 지나는 것 )을 엄격히 통제해야 하고 확실히 공공지역을 가로 지나(또는 공중에 가설하여 가로 지나는 것)야 하는 경우 자격을 갖춘 안전평가기관이 전문적인 안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위험화학품을 생산, **저장**하는 단위는 그가 부설한 위험화학품 배관에 명확한 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위험화학품 배관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사, 검측, **순찰 및 보호**해야 한다.

위험화학품 배관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시공을 진행하는 경우, 시공단위는 작업 개시 7일 전에 **시공방안을** 서면으로 배관 소속 단위에 통지하고 배관 소속 단위와 공동으로 응급대비책을 작성하고 상응한 안전 방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배관 소속 단위는 반드시 전문 인원을 현장에 파견해 배관 안전보호를 지도해야 한다.

1. **파이프를 통해 석유 천연가스를 운송하는 경우, 석유 천연가스 배관 보호 등은 관련 법률, 행정법규와 국가기준 또는 업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2. **연구개발 단위가 위험화학품 신생산공정, 신기술 개발을 진행하는 경우 반드시 안전리스크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연구개발 과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연구개발 과정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연구개발 기업이 위험화학품 신생산공정, 신기술을 양도하는 경우, 반드시 신생산공정, 신기술의 안전성 논증 보고서 및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 **위험화학품 생산, 저장기업의 주요 책임자, 안전생산 책임자는 화학공업 관련 학과 전문대졸업 및 그 이상 학력과 3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전임(专职) 안전관리자는 화학관련 전문기술 중급 및 그 이상의 직함이나 화학공업 안전 분야 공인안전공정사 자격을 구비해야 하고， 신규 채용한 현장직 종사자는 화학공업 직업 교육 배경이나 일반 고중 및 그 이상의 학력을 구비해야 하며, 위험화학품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평가를 거쳐 합격하여야만 근무할 수 있다**
2. 위험화학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정식 생산을 시작하기 전에 <안전생산허가증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험화학품 안전생산허가증(**생산**)을 취득하여야 한다.

**위험도가 비교적 낮고 생산공정 과정이 단순하며 화학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위험화학품 생산기업은 위험화학품 안전생산허가증을 취득할 필요가 없고** 현급 인민정부 **응급관리부서에서 비안관리를 실시하지만 중대 위험원을 구성하는 경우는 제외되며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응급관리부서에서 제정한다.**

국가가 생산허가제도를 실행하는 공업제품목록에 등재된 위험화학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업제품생산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위험화학품 안전생산허가증, 공업제품 생산허가증을 발급하는 부서는 그가 허가증을 발급한 상황을 적시에 **사회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국가 비밀, 상업 비밀, 개인 사생활에 관한 정보와 관련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1. 위험화학품의 포장, **용기**는 법률, 행정법규, 규장의 규정 및 국가 기준, 업계 기준의 요구사항에 부합하여야 하고 점검을 진행 및 점검에 합격 되어야 하며, **생산기업은 점검을 거치지 않았거나 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위험화학품 포장물, 용기를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위험화학품의 포장물, 용기의 재질 및 위험화학품 포장의 형식, 규격, 방법 및 단품 품질(중량)은 포장된 위험화학품의 성질과 용도에 적합해야 한다.

1. 국가가 생산허가증제도를 실행하는 공업제품목록에 등재된 위험화학품 포장물, 용기를 생산하는 기업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공업제품생산허가증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업제품생산허가증을 취득해야 하고, 그가 생산한 위험화학품의 포장물, 용기는 국무원 **시장감독관리**부문에서 승인한 점검기관의 점검을 거쳐 합격하여야만 출고하여 판매될 수 있다.

위험화학품을 운송하는 선박 및 그 선적 용기는 국가 선박점검규범에 따라 생산해야 하고 해사관리기관이 승인한 선박점검기관의 합격 판정을 받아야만 사용에 투입될 수 있다.

중복 사용하는 위험화학품의 포장물, 용기의 경우 사용단위는 중복 사용 전에 검사를 실시해야 하고, 안전상의 잠재적 리스크가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한다. 사용단위는 반드시 검사 상황을 기록해야 하며 기록의 보존 기간은 2년 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1. **위험화학품의 생산, 저장 기업은 국가 기준 또는 업계 기준의 규정에 따라 자동제어시스템과 안전계기시스템을 갖추고 안전모니터링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화 안전 감시, 모니터링과 조기경고를 구축하고 정부 관련 부서의 안전감사경보시스템과의 상호 연결을 실현해야 한다.**
2. 위험화학품을 생산, 저장하는 단위는 그가 생산, **저장**하는 위험화학품의 종류와 위험 특성에 근거하여 작업장소에 상응하는 감측, 모니터링, 통풍, 썬 케어(防嗮), 온도 조절, 방화, 소화, 방폭, 압력 방출, 방독, 중화, 방습, 피뢰, 정전기 방지, 방부식, 방누설 및 방호 뚝 또는 격리 조작 등 안전시설과 설비를 설치해야 하고, 국가 기준, 업계 기준 또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시설과 설비를 항상 유지보수하여 안전시설과 설비의 정상적인 사용을 보장해야 한다.

위험화학품을 생산, **저장**하는 단위는 그 작업장소와 안전시설 및 설비에 명백한 안전 경고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1. 위험화학품을 생산, **저장**하는 단위는 작업장소에 통신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하고 적용 상태에 처하도록 확보해야 한다.
2. 위험화학품을 생산, **저장, 하역**하는 기업은 국가가 규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3 년마다 본 기업의 안전생산 조건에 대한 안전평가를 실시하고 안전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안전평가 보고서의 내용은 안전생산 조건에 존재하는 문제점에 대한 시정 및 개선 방안을 포함해야 하고 **결론적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위험화학품을 생산, **저장**하는 기업은 안전평가 보고서와 시정 방안의 실행 상황을 소재지 현급 인민 정부의 **응급**관리부서에 비안해야 한다. 항구 내에 위험화학품을 **저장**하는 기업은 안전평가 보고서와 시정 방안의 이행 상황을 항구 행정관리부서에 보고하고 비안 한다.

1. 극독화학품 또는 국무원 공안부서가 규정한 폭발물 제작용 위험화학품을 생산, 저장하는 단위는 그가 생산, **저장**한 극독화학품, 폭발물 제작용 위험화학품의 수량, 행방(流向)을 사실대로 기록하고 필요한 안전예방조치를 취하여 극독화학품, 폭발물 제작용 위험화학품의 분실 또는 도난을 방지하여야 하며, 극독화학품, 폭발물 제작용 위험화학품의 분실 또는 도난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현지 공안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극독화학품, 폭발물 제작용 위험화학품을 생산, **저장**하는 단위는 치안보위기관을 설치하고 전문 치안보위인원을 갖추어야 한다.

1. 위험화학품은 전문용 창고, 전문용 장소 또는 전문용 **저장**실(이하 총칭하여 “전문용 **저장** 장소”)에 **저장**해야 하고 전문 인원이 관리를 책임지며, 극독화학품은 전문용 **저장** 장소에 단독으로 보관하고 2 인 접수-발송, 2인 보관 제도를 실시하고 **접수-발송 기록은 3 년간 보관해야 한다.**

**위험화학품 탱크 구역의 안전 관리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 한다**.

위험화학품의 **저장** 방식과 방법 및 저장 수량은 국가 기준 또는 관련 국가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위험화학품을 **저장**하는 단위는 위험화학품의 창고 출입을 확인하고 등기하는 제도를 구축해야한다.

극독화학품 및 **저장** 수량이 중대 위험원을 구성하는 기타 위험화학품에 대하여 **저장** 단위는 그 **저장** 수량, **저장** 위치 및 관리 인원의 상황을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의 **응급**관리부서(항구에 **저장**한 경우 항구 행정관리부서에 보고)와 공안기관에 보고하고 비안해야 한다.

1. 위험화학품 전문용 **저장 장소**는 국가 기준과 업계 기준의 요건을 충족 해야하고 명백한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극독화학품, 폭발물 제작용 위험화학품을 **저장**하는 전문용 **저장 장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응한 기술 예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위험화학품을 **저장**하는 단위는 그 위험화학품 전문용**저장장소**의 **저장 탱크 등** 안전시설 및 설비에 대해 정기 검사 및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1. 위험화학품을 생산, **저장**하는 단위의 **전체 또는 일부**가 생산 전환, 생산 정지, 휴업 또는 해체 되는 경우,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그 위험화학품 생산 장치, **저장** 시설 및 위험화학품 재고를 적시에 적절하게 처리해야 하고 위험화학품을 버려서는 아니되고, 처리 방안은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주택성향건설부서, 응급**관리부서, 공업정보화부서, **생태환경주관부서**와 공안기관에 보고하고 비안 해야 한다. **응급관리부서**는 **생태환경주관부서** 및 공안 기관과 함께 처리 상황을 감독, 검사하고, 규정에 맞지 않는 처리가 발견되면 즉시 처리하도록 명해야 한다.

# 제5장 사용 안전

1. 위험화학품을 사용하는 단위의 사용 조건(생산공정 포함)은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과 국가 기준, 업계 기준의 요구에 부합해야 하고 사용하는 위험화학품의 종류, 위험 특성 및 사용량과 사용 방식에 근거하여 위험화학품 사용에 대한 안전 관리규장제도와 안전조작규정(规程)을 수립 및 보완하여 위험화학품의 안전 사용을 보장해야 한다.
2. **규정된 종류의** 위험화학품을 사용하여 생산하고 사용량이 일정량에 도달하는 화학공업 기업(위험화학품 생산 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 이하 동일)은 본법의 규정에 따라 위험화학품 안전**생산**허가증(**사용**)을 취득해야 한다.

전항에서 규정하는 위험화학품의 **종류와** 그 사용량에 대한 수량 기준은 국무원 **응급**관리부서가 국무원 공안부와 농업농촌주관부서와 함께 확정하여 공포한다.

1. 위험화학품 안전**생산**허가증(**사용**)을 신청하는 화학공업기업은 본**법** 제 **48** 조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는 외에도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사용하는 위험화학품에 적합한 전문 기술 인력을 보유.

(2) 안전관리기관**과** 안전관리 전담인원을 구비하고 **안전관리 전담인원이 화학공업 관련 중급 이상 전문 기술 직함 또는 화학공업 안전분야 공인공정사 자격증을 구비.**

(3) 국가 규정에 부합되는 위험화학품 사고에 대한 응급대비책과 **전담 또는 겸직 응급구조인원**, 필요한 응급구조자재, 설비를 보유.

(4) 법에 따라 안전성 평가를 실시.

1. 위험화학품 안전**생산**허가증(**사용**)을 신청하는 화학공업 기업은 소재지 구(区)를 설치한 시급인민정부 **응급**관리부서에 신청을 제기하고, 자신이 본**법** 제 **50** 조에 규정한 조건에 부합함을 입증하는 증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를 설치한 시급인민정부 응급관리부서는 법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고 증명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20** **영업일** 이내에 승인 또는 승인 거부 결정을 내린다. 허가하는 경우 위험화학품 안전**생산**허가증(**사용**)을 발급하고, 허가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사유를 설명한다.

**응급**관리 부서는 그가 위험화학품 안전**생산**허가증(**사용)** 발급한 상황을 적시에 **사회에 공시해야 하고 국가비밀, 상업비밀 및 개인 정보와 관련된 정보는 제외된다**.

1. **위험화학품을 사용하는 단위는 종사자에게 작업장소에서 사용하는 위험화학품의 안전기술설명서와 안전 라벨을 제공하고 위험화학품 용기에 안전 라벨을 부착하고 종사자에게 올바른 사용 방법과 비상 상황에서 취해야 할 조치를 고지해야 한다.**
2. **학교, 과학연구기관, 의료기관 등 위험화학품을 사용하는 단위는 위험 유해 요소를 식별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안전리스크예방조치를 취하며 종사자의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위험화학품 안전관리규장제도를 수립 및 보완한다.**
3. **어떠한 단위나 개인이 위험화학품을 구매하는 경우, 위험화학품 생산, 경영 단위에 위험화학품의 안전기술설명서를 요구하고 그 위험 특성, 보호 조치 및 사용 방법을 요해 할 권리가 있다.**

위험화학품 생산, 경영 단위는 위험화학품을 판매 할 때 구매하는 단위 또는 개인에게 법률, 행정법규, 국가 기준과 산업 기준에 부합되는 화학품 안전기술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1. 위험화학품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단위는 상응한 안전리스크평가를 진행하여, 본 단위에 존재하는 안전리스크를 확인하고 안전리스크 등급별 관리를 실시하고 상응한 안전통제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위험화학품을 함부로 버려서는 아니 된다. 개인이 위험화학품을 소지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관련 교통운송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일반인이 발견하거나 주은 주인이 없는 위험화학품은 공안기관이 접수한다. 공안기관이 접수하거나 관련 부서가 법에 따라 압수한 위험화학품에 대해 무공해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위험화학품 생산 기업 또는 **폐기위험화학품 집중 처분 단위**에 인계하여 처리한다. 처리비용은 국가 재정이 부담한다.
4. **단위와 개인은 위험화학품의 분실을 엄격히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관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위험화학품이 도난, 강탈을 당하거나 기타 원인으로 유실 된 경우 사건 발생 단위와 개인은 즉시 공안기관에 보고하고 필요한 관리조치를 취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관련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공안 기관은 보고를 받은 후 제때에 조사하고 처리해야 한다. 관련 부서는 공안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5. **본법 제31조, 제32조, 제40조, 제41조, 제43조 제1항, 제44조, 제45조, 제46조**의 위험화학품을 생산, **저장**하는 단위에 대한 규정은 위험화학품을 사용하는 단위에 적용되고, 제29조, 제30조, 제33조, 제35조, 제39조 및 제42조의 위험화학품을 생산, **저장**하는 기업에 관한 규정은 위험화학품을 사용하여 생산에 종사하는 기업에 적용된다.

# 제6장 경영 안전

1. 국가는 위험화학품 경영(창고 저장 경영 포함, 하동)에 대해 허가제도를 실행한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허가 없이 위험화학품 경영에 종사할 수 없다.

법에 따라 설립된 위험화학품 생산 기업이 그 공장구역 범위 내에서 본 기업이 생산한 위험화학품을 판매하는 경우 위험화학품 경영허가를 취득할 필요가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항구법>의 규정에 따라 항구경영허가증을 취득한 항구 경영자는 항구 내에서 위험화학품 창고저장 경영에 종사할 수 있고 위험화학품경영허가를 취득할 필요가 없다.

1. 위험화학품 경영에 종사하는 기업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한다.

(1) 국가 기준과 업계 기준에 부합하는 경영장소를 구비해야 하고 위험화학품을 **저장**하는 경우, 국가 기준, 업계 기준에 부합하는 **저장**시설을 추가로 구비해야 한다.

(2) **기업의 주요 책임자와 안전관리 전담인원은 본기업의 위험화학품 경영 활동에 적합한 안전생산지식 및 관리능력을 구비하고, 응급관리부서의 평가 및 평가에 합격해야 하며, 특수 작업 인력은 전문적인 안전작업교육을 받고 특수업무작업증서를 취득하여야 하고, 기타** 종사자는 전문기술 교육을 받고 평가를 통과해야 함.

(3) 건전한 안전관리 규장제도를 구비.

(4) 안전관리 전담인원을 구비.

(5) 국가 규정에 부합하는 위험화학품 사고에 대한 응급대비책 및 필요한 응급구조기자재, 설비를 구비.

(6) 법률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조건.

1. 극독화학품, 폭발물 제조용 위험화학품 경영에 종사하는 기업은 소재지 구를 설치한 시급인민정부 **응급**관리부서에 신청을 제기하고 기타 위험화학품 경영에 종사하는 기업은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응급**관리부서에 신청해야 한다(저장 시설이 있는 경우, 소재지 구를 설치한 시급인민정부 **응급**관리부서에 신청함). 신청자는 본**법** **제61조**에 규정 된 조건을 만족하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를 설치한 시급 인민정부 **응급**관리부서 또는 현급 인민정부 응급관리 부서는 법에 따라 심사하고 신청자의 **종업원의 안전교육상황**, 경영 장소, **저장** 시설, **안전관리상황 등** **안전 조건**에 대해 현장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 증명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20영업일** 내에 승인 또는 승인 거부 결정을 내린다. 승인하면 위험화학품 **안전생산허가증**(**경영**)를 발급하고, 승인되지 않은 경우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구를 설치한 시급인민정부 **응급**관리부서와 현급 인민정부 **응급**관리부서는 그가 위험화학품 경영 **안전생산허가증(경영**)을 발급한 상황을 적시에 **사회에 공시하고 국가비밀, 상업비밀 및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는 제외된다**.

1. 위험화학품 경영 기업이 위험화학품을 **저장**하는 경우, 본**법 제4장**의 위험화학품 **저장**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위험화학품 매점은 그의 **저장 장소, 경영 장소 내에** 민용 소포장 위험화학품을 보관할 수 있으나 **총량은 국가가 규정한 제한량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법적** 허가없이 위험화학품의 생산 및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기업으로부터 위험화학품을 구매해서는 아니되며, 화학품안전기술설명서 또는 화학품안전라벨이 없는 위험화학품을 경영해서는 아니 되고, **화학품 안전기술설명서 또는 안전 라벨을 함부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법에 의해 위험화학품 안전생산허가증을 취득한 기업은 상응한 허가증서으로 극독화학품, 폭발물 제조용 위험화학품을 구매한다. 민간 폭발물, **불꽃 폭죽 및 무기 장비 과학연구** 생산 기업은 **상응한** 허가증으로 폭발물 제조용 위험화학품을 구매한다. 전항에 규정 외의 단위가 극독화학품을 구매하는 경우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에 신청하여 극독화학품 구매 허가증을 취득해야 하고 폭발물 제조용 위험화학품을 구매하는 경우 본 단위가 발급한 적법 용도 설명을 소지해야 한다.

개인은 극독화학품(극독화학품에 속하는 농약은 제외)과 폭발물 제조용 위험화학품(**폭발물 제조용 위험화학품을 함유하는 식품 첨가제, 약품, 수의약, 소독제 등 생활용품은 제외**)을 구매 할 수 없다.

1. 극독화학품 구매허가증을 신청하는 신청자는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에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영업허가(영업집조) 또는 법인 증서(등록 증서) 복사본.

(2) 구매하고자 하는 극독화학품의 품종, 수량에 대한 설명.

(3) 극독화학품 구매 용도에 대한 설명.

(4) 업무담당자의 신분 증명.

현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은 전항의 자료를 받은 날부터 3 일 이내에 승인 또는 승인 거부 결정을 내려야 한다. 허가하는 경우 극독화학품 구매 허가증을 발급하고 허가하지 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사유를 설명한다.

극독화학품 구매허가증 관리방법은 국무원 공안부에서 제정한다.

1. 위험화학품 생산 기업, 경영기업이 극독화학품, 폭발물 제조용 위험화학품을 판매하는 경우 본**법 제65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하는 관련 허가증 또는 증명 문서를 확인해야 하고 관련 허가증서 또는 증명 문서가 없는 단위에 극독화학품, 폭발물 제조용 위험화학품을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극독화학품 구매허가증을 소지하고 극독화학품을 구매하는 경우 허가증에 기재한 품종, 수량에 따라 판매해야 한다.

개인에게 극독화학품(극독화각품에 속하는 농약은 제외)과 폭발물 제조용 위험화학품(**폭발물 제조용 위험화학품을 함유하는 식품 첨가제, 약품, 수의약, 소독제 등 생활용품은 제외**)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1. 위험화학품 생산 기업 및 경영 기업이 극독화학품 및 폭발물 제작용 위험화학품을 판매 하는 경우, 구매 단위의 명칭, 주소, 업무 담당자 이름, 신분증 번호 및 구매한 극독화학품, 폭발물 제조용 위험화학품의 품종, 수량 및 용도를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판매 기록 및 업무담당자의 신분증 복사본, 관련 허가증 복사본 또는 증명 문서의 보관 기간은 3 년 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극독화학품, 폭발물 제조용 위험화학품 판매 기업, 구매 단위는 판매, 구매 후 10일 내에 판매, 구매한 극독화학품, 폭발물 제조용 위험화학품의 품종, 수량 및 행방에 대한 정보를 소재지 인민정부 공안기관에 보고 및 비안하고 **정보시시템에 입력**한다.

1. 극독화학품, 폭발물 제조용 위험화학품을 사용하는 단위는 그가 구매한 극독화학품 또는 폭발물 제조용 위험화학품을 대여 또는 양도 할 수 없으며, 생산 전환, 생산 중단, 이사, 폐쇄 등 이유로 인해 확실히 양도해야 하는 경우, 본**법 제65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관련 허가증 또는 증명 서류를 보유한 단위에 양도하고, 양도 후 관련 상황을 적시에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2. **인터넷을 통한 극독화학품, 폭발물 제조용위험화학품 판매를 금지한다.**

**인터넷을 통해 기타 위험화학품을 판매하는 경우, 포장, 저장, 운송 관련 요구에 부합되어야 하는 외에,** 인터넷 **정보 공개에 관한 관련 규정도 준수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공안부, 공업정보화부서, 응급관리부서, 시장감독관리부서, 우편관리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 제7장 운송 안전

1. **도로, 수로, 철도와 민용 항공을 통하여 위험화물에 해당하는 위험화학품을 운송하는 경우 위험화물 운송, 저장, 하역에 관한 법률, 행정법규와 국가기준 또는 업계 기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위험화물에 해당되지 않는 위험화학품은 국무원 교통운송주관부서가 교통운송규칙에 따라 제정한 면제 수량 기준 및 면제 조건에 따라 운송한다.**
2. 위험화학품 도로 운송, 수로 운송, **철도운송, 항공운송**에 종사하는 경우, 도로 운송, 수로 운송, **철도운송, 항공운송**에 관한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위험화물 도로운송허가, 위험화물 수로운송허가 **또는 비안, 철도운송허가, 항공운송허가**를 **각각** 취득하여야 하고 **시장감독관리**부서에 등기절차를 밟아야 한다.

위험화학품 도로운송기업, 수로운송기업, **철도운송, 항공운송기업**은 안전관리 전담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1. 위험화학품 도로운송기업, 수로운송기업의 운전기사, 선원, 하역 관리인원, 호송인원, 신고인원, 컨테이너 장정 현장 검사인원은 교통운송주관부서의 평가에 합격하여 취업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교통운송주관부서가 제정한다.

위험화학품의 하역작업은 안전작업기준, 규정과 제도를 준수하고 하역 관리인원의 현장 지휘 또는 감독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수로로 위험화학품을 운송하는 컨테이너 장정 작업은 컨테이너 장정 현장 검사인원의 지휘 또는 감독하에 진행되어야 하고 적재, 격리의 규범과 요구에 부합되어야 하며 컨케이너 작업을 완료한 후 컨테이너 장정 현장 검사인원은 포장증명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1. 위험화학품운송은 위험화학품의 위험특성에 따라 상응한 안전예방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방호용품과 응급구조 기자재를 배치하여야 한다.

위험화학품 운송에 사용되는 홈탱크, **탱크식 컨테이너** 및 기타 용기는 위험화학품이 운송과정에서 온도, 습도 또는 압력의 변화로 인해 누설되지 않도록 입구를 엄밀하게 밀봉하여야 하고 홈탱크 및 기타 용기의 일류 및 압력 방출 장치가 정확하게 설치되고 열림과 잠금이 원활해야 한다.

위험화학품을 운송하는 운전 인원, 선원, 하역관리인원, 호송인원, 신고인원, 컨테이너 포장 현장 검사인원은 운송하는 위험화학품의 위험 특성 및 그 포장물, 용기의 사용 요구를 숙지해야 하고 위험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취하는 응급처리**조치**를 **장악**해야 한다.

1. 위험화학품을 도로로 운송하는 경우 송하인은 **상응하는** 위험화물 도로운송허가증이 있는 기업에게 운송을 위탁해야 한다.

**위험화학품의 도로운송 운송자는 차량 운행 기간에 위치확정시스템을 통해 차량과 운전자에 대해 감독관리하여 안전감시, 모니터링과 조기경보를 실시한다.**

1. 도로로 위험화학품을 운송하는 경우 충진(充装)단위는 운송차량의 규정 적재 질량에 따라 위험화학품을 적재해야 하고 초과하여 적재해서는 아니된다. **운송자와 충전(充装) 단위는 운송차량, 탱크체(罐体)가 안전기술점검 유효기간내에 있는지, 안장 여부, 경고 표시를 설치, 부착 또는 페이팅(喷涂) 하였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위험화학품 운송차량 **및 그 탱크체**는 국가기준이 요구하는 안전기술요건에 부합하여야 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세척**과 안전기술점검을 진행해야 한다.

위험화학품 운송차량 **및 그 탱크체**는 국가기준 요구에 부합하는 경고 표지를 설치, 부착 또는 페인팅하여야 한다.

1. 도로로 위험화학품을 운송하는 경우 **운송자**는 호송인원을 배치하여야 하고 운송하는 위험화학품이 호송인원의 감독관리하에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호송인원은 차량과 함께 운송하는 위험화학품의 안전기술설명서와 안전라벨을 소지하여야 한다.**

**도로로 위험화학품을 운송하는 경우 위험화학품의 포장물 재질, 형식, 강도 및 포장방법은 국가 관련 포장규범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운송기업은 운송하는 위험화학품의 위험특성에 대하여 상응한 위험화학품 사고 응급구조대비책을 작성하고 운송차량에 필요한 응급구조기자재와 설비를 배치하여야 한다.**

위험화학품 운송 도중에 주숙 또는 기타 정상적인 운송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여 오랜 시간 동안 주차해야 하는 경우 운전자, 호송인원은 상응한 안전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위험화학품을 운송하는 운전자는 일간 연속 운전시간이 3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고 야간 연속 운전 시간은 2시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극독화학품 또는 폭발물 제조용 위험화학품을 운송하는 경우 현지 공안기관에 추가로 보고해야 한다.

1. 공안기관의 비준이 없이 위험화학품을 운송하는 차량은 위험화학품 운송차량 통행이 금지된 구역에 진입해서는 아니 된다. 위험화학품 운송차량 통행제한 구역은 현급인민정부 공안기관이 **위험화학품 리스크 분류에 근거하여 구분 확정**하고 명백한 표지를 설치한다.

**공안기관은 특대형 도로 다리, 특장(特长) 도로 터널, 상수도 수원지에서의 위험화물 운송차량의 통행을 엄격하게 통제해야 한다.**

1. 도로로 극독화학품을 운송하는 경우 송하인은 운송 출발지 또는 목적지 현급인민정부 공안기관에 극독화학품 도로운송 통행증을 신청해야 한다.

극독화학품 도로운송 통행증을 신청하는 송하인은 현급인민정부 공안기관에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운송할 극독화학품의 품종, 수량에 대한 설명.

(2) 운송 출발지, 목적지, 운송 시간 및 운송 노선에 관한 설명.

(3) 운송자가 취득한 위험화물 도로운송 허가, 운송차량이 취득한 운영증 및 운전자, 호송인원이 취득한 근무자격 증명 문서.

(4) 본**법 제65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하는 극독화학품을 구매하는 관련 허가증 또는 세관이 발급한 수출입 증명 문서.

현급인민정부 공안기관은 전항에서 규정한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허가 또는 허가 거부 결정을 내려야 한다. 허가하는 경우 극독화학품 도로운송 통행증을 발급하고 허가하지 않을 경우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극독화학품 도로운송 통행증 관리방법은 국무원 공안부가 제정한다.

1. 극독화학품, 폭발물 제조용 위험화학품이 도로운송 도중에 분실, 도난, 강탈을 당하거나 넘쳐 흐르거나 누설 등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운전자, 호송인원은 즉시 상응한 경고 조치와 안전조치를 취하고 당지 공안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보고를 받은 후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즉시 **교통운수관리부서, 응급**관리부서, **생태환경주관부서, 위생건강**부서에 통보한다. 관련부서는 필요한 응급처분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수로로 위험화학품을 운송하는 경우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 교통운송주관부서의 위험화물 수로운송안전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3. 해사관리기관은 위험화학품의 종류와 위험 특성에 따라 위험화학품 선박운송의 안전운송조건을 확정한다.

선박운송으로 교부할 예정인 위험화학품의 안전운송조건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화물 소유자 또는 대리인은 **국가해사관리기관이 승인한** 관련 기술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진행하여 안전운송조건을 명확히 하고 해사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은 후 선박운송에 교부할 수 있다.

1. 극독화학품 및 국가가 내륙 하천을 통한 운송을 금지한 기타 위험화학품을 내륙 하천의 밀폐성 수역을 통해 운송하는 것을 금지한다.

전항 규정 외의 내륙 하천 수역에서 국가가 내륙 하천 운송을 금지한 극독화학품 및 기타 위험화학품의 운송을 금지한다.

내륙 하천을 통한 운송을 금지하는 극독화학품 및 기타 위험화학품의 범위는 국무원 교통운송주관부서가 국무원 **생태환경주관부서**, 공업정보화부서, **응급**관리부서와 함께 위험화학품의 위험 특성, 위험화학품이 인체와 물환경에 대한 위험 정도 및 위험 결과를 제거하는 난이 정도 등 요소에 근거하여 제정 및 공포한다.

1. 국무원 교통운송주관부서는 위험화학품의 위험특성에 따라 내륙 하천으로 운송하는 본**법 제83조** 규정 이외의 위험화학품(이하 “내륙 하천을 통해 운송하는 위험화학품”)에 대해 분류관리를 실행하고 각종 위험화학품의 운송방식, 포방규범과 안전방호조치 등에 대해 각각 규정을 하고 감독을 실시한다.
2. 내륙 하천을 통해 운송하는 위험화학품은 법에 따라 위험화물 수로운송 허가를 취득한 수로운송기업이 운송해야 하고 기타 단위와 개인이 운송해서는 아니 된다. 송하인은 법에 따라 위험화물 수로운송허가를 취득한 수로운송기업에 운송을 의뢰해야 하고 기타 단위와 개인에게 운송을 의뢰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내륙 하천을 통해 운송하는 위험화학품은 적법하게 위험화물 적재 증서를 취득한 운송선박을 사용해야 한다. 수로운송기업은 운송하는 위험화학품의 위험 특성에 따라 운송선박 위험화학품 사고 응급구조대비책을 제정하고 운송선박에 충분하고 유효한 응급구조 기자재와 설비를 배치하여야 한다.

내륙 하천을 통해 위험화학품을 운송하는 선박은 그 소유자 또는 경영자가 선박오염손해책임보험증서 또는 재무담보증명을 취득해야 한다. 선박오염손해책임보험증서 또는 재무담보증명의 부본은 선박에 소지해야 한다.

1. 내륙 하천을 통해 위험화학품을 운송하는 경우 위험화학품 포장물의 재질, 형식, 강도 및 포장방법은 위험화학품 수로운송 포장규범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국무원 교통운송주관부서가 단일 선박의 위험화학품 운송 수량에 대해 제한성 규정이 있는 경우 운송자는 규정에 따라 운송 수량을 안배해야 한다.
2. 위험화학품 운송작업에 사용되는 내륙 하천 부두, 정박 위치는 국가의 관련 안전규범에 부합해야 하고 음용수 취수구(饮用水取水口)와 국가가 규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관련 관리단위는 부두, 정착 위치 위험화학품 사고 응급대비책을 제정하고 부두, 정착 위치에 유효한 응급구조기자재와 설비를 충분히 비치해야 한다.

위험화학품 운송작업에 사용되는 내륙 하천 부두, 정착 위치는 교통운송주관부서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점검 및 점검에 통과된 후 사용에 투입될 수 있다.

1. 선박이 위험화학품을 적재하고 내륙 하천 항구를 출입하는 경우 위험화학품의 명칭, 위험 특성, 포장 및 항구 출입 시간 등 사항을 사전에 해사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해사관리기관은 보고를 받은 후 국무원 교통운송주관부서가 규정한 시간 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보고인에게 통지하고 동시에 항구 행정관리부서에 통보한다. 선박, 항선, 화물 종류가 정해진 선박은 정기 보고를 할 수 있다.

내륙 하천 항구에서 위험화학품의 하역, 바지선 하역작업 진행하는 경우, 위험화학품의 명칭, 위험 특성, 포장과 작업시간, 지점 등 사항을 항구 행정관리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항구 행정관리부서는 보고를 받은 후 국무원 교통운송주관부서가 규정한 시간 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보고인에게 통지하고 동시에 해사관리기관에 통보한다.

위험화학품을 적재 및 운송하는 선박이 내륙 하천에서 운행하고 수운구조물을 통과하는 경우 사전에 교통운송주관부서에 신고하고 교통운송주관부서의 관리를 받는다.

1. 위험화학품을 적재 및 운송하는 선박이 운행, 하역 또는 정착하는 경우 전문용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하고 규정에 따라 전문용 신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위험화학품을 적재 및 운송하는 선박이 내륙 하천에서 운행하는 경우 국무원 교통운수주관부서의 규정에 따라 인항(引航)이 필요하면 인항을 신청해야 한다.

1. 위험화학품을 적재 및 운송하는 선박이 내륙 하천에서 운행하는 경우 법률, 행정법규와 국가 기타 관련 상수도 수원지과 자연보호지 보호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내륙 하천 운행노선 발전 규획은 적법하게 비준을 받은 상수도 수원지 보호구 확정 방안과 **자연보호지 전반적 규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2. 위험화학품 운송을 의뢰한 경우 의뢰자는 운송자에게 운송을 의뢰한 위험화학품의 종류, 수량, 위험 특성 및 위험상황 발생시 응급처리조치를 설명하고 **화학품 안전기술설명서를 제공**하며 국가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운송을 의뢰한 위험화학품을 적절하게 포장하고 **위험화학품 포장(외포장물 포함)에 포장내 위험화학품과 일치한 화학품 안전라벨을 부착하거나 달아야 한다.**

위험화학품 운송시 억제제 또는 안정제를 첨가해야 하는 경우 송하인은 이를 첨가해야 하고 관련 상황을 운송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1. 송하인과 **운송자**는 운송 의뢰 **또는 운송하는** 일반 화물에 위험화학품을 섞어서는 아니 되고 위험화학품을 보고하지 않거나 보통화물로 거짓 보고하여 운송의뢰 또는 **운송**해서는 아니 된다.

**위험화학품을 우송의 방식으로 발송 또는 접수하는 경우 국무원 우정관리부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본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혐의가 있는 경우 교통운송주관부서, 우편관리부서는 법에 따라 소포를 열어 점검할 수 있다.

1. 철도, 항공을 통한 위험화학품의 운송에 관한 안전관리는 철도, 항공 운송(**운송과정 임시 저장 포함**)에 관한 법률, 행정법규, 규장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 제8장 폐기처분 안전

1. **폐기 위험화학품이 발생하는 단위는 국가 규정에 따라 폐기 위험화학품 관리계획을 제정하고 폐기 위험화학품 관리 대장을 만들어 관련 정보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국가 위험 폐기물 정보 관리 시스템을 통해 폐기 위험화학품의 종류, 발생량, 행방, 저장, 처리 등 관련 자료를 소재지 생태환경주관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생태환경주관 부서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동급 비상관리부서에 기업 비안정보를 보내야 한다.**

**상온 상압하에서 폭발성, 인화성 및 유독 가스를 배출하는 폐기 위험화학품을 저장, 처분 전에 폐기 위험화학품 이 발생하는 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안정화 사전처리를 진행해야 한다.**

1. **폐기 위험화학품이 발생되는 단위는 국가기준에 맞는 저장시설을 갖추고 폐기 위험화학품의 발생 단계, 종류, 수량, 성질 등을 분석하고 리스크 방지 조치를 취하며 안전 처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 **위험화학품 건설 프로젝트의 안전시설을 수집, 저장, 이용, 처분하고 본법 규정에 따라 주체공정과 동시에 설계, 시공, 투입, 생산 및 사용하며, “3동시”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생태환경 주관 부서에서 제정한다.**
3. **폐기 위험화학품 및 포장물, 용기의 수집, 저장, 이용, 처분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단위는 반드시 국가 관련 법률, 행정 법규와 국가 기준 또는 업계 기준에 규정된 안전생산 조건을 갖추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생태환경 주관 부서에서 발급하는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허가증의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국무원에서 제정한다.**

**허가증이 없이 또는 허가증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폐기물의 수집, 저장, 이용, 처분에 종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위험 폐기물을 허가증이 없는 단위 또는 기타 생산 경영자에게 제공하거나 위탁하여 수집, 저장, 이용, 처분하는 것을 금지한다.**

**위험 폐기물 경영허가증을 취득한 단위는 위험화학품 안전생산 관련 별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1. **위험화학품을 수집, 저장, 이용, 처분하는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단위는 반드시 건전한 안전생산규정제도를 수립하고 안전생산관리기관을 설치하거나 전담 안전관리원을 배치하여 확실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생태환경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감독관리를 받아야 한다.**

**위험 물품을 수집, 저장, 이용, 처분하는 단위는 반드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환경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1. **폐기 위험화학품의 운송은 반드시 국가의 위험화물 운송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효과적인 위험 방지 조치를 취하여 폐기위험화학품 운송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 제9장 사고 긴급구조

1.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의 응급관리 부서는 공업정보화, **생태환경**, 공안, 위생**건강**, 교통운송, 시장감독관리 등 부서와 함께 본 지역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위험화학품 사고에 대한 응급대비책을 제정하여 본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취득하고 **법에 따라 사회에 공포해야 한다.**

**위험화학품 안전감독 관리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반드시 본 부서의 위험화학품 사고에 대한 응급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1. 위험화학품 단위는 반드시 **응급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응급 관리제도를 완비하며**, 본 단위의 위험화학품 사고에 대한 응급 예방책을 제정하고, **법에 따라 전담 또는 겸직 응급구조대를 건립하고** 응급 구조 대원과 필요한 응급 구조 기자재와 **장비, 물자를** 배치하고, 정기적으로 응급 구조 훈련을 조직해야 한다. **생산경영 규모가 비교적 작은 경우, 전문적인 응급구조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지만 전담 또는 겸직 응급구조인원을 배치하거나 인근 응급구호대와 응급구호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위험화학품 단위는 위험화학품 사고에 대한 응급 예방책을 **해당 지역의 시급 인민정부의 응급관리 부서**와 **기타 안전생산감독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에** 보고하여 비안 하며 **법에 따라 공포해야 한다.**

1.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생산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업무의 실제 수요에 따라 화학공업단지에 위험화학품 전문 응급구조역량 건설을 강화하고, 조건을 갖춘 생산경영단위, 사회조직과 공동으로 위험화학품 전문응급구조대를 조직하여 필요한 응급구조장비와 물자를 갖추고 정기적으로 훈련을 조직할 수 있다.**

**화학공업단지 내 위험화학품 단위는 연합하여 응급구조대를 조직할 수 있다.**

1. 위험화학품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즉시 본 단위 위험화학품 응급대비책에 따라 구조를 조직해야 하며 현지 **응급**관리부서와 **생태환경**, 공안, 위생**건강**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단위와 인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하며 도로 운송, 수로 운송 과정에서 위험화학품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운전자, 선원 또는 호송인원 등은 반드시 사고 발생지 교통 운송 주관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2. **위험화학품 단위에서 위험화학품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작업현장의 근무 책임자, 반장, 조장과 관리자(调度人员)는 즉시 생산 중단, 인원 철수 명령을 내리고 관련 조난 인원의 철수를 지휘할 권리가 있다.**
3. 위험화학품 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련 지방인민정부는 반드시 즉시 응급관리, **생태환경**, 공안, 위생**건강**, 교통운송 등 관련부서를 조직하여 본 지역의 위험화학품사고 응급대비책에 따라 구조를 조직해야 하며 지연, 회피해서는 아니 된다.

관련 지방 인민정부와 그 관련 부서는 아래의 규정에 따라 생산 **중단과 인원 철수** 등 필요한 응급처리조치를 실행하여 사고 손실을 줄이고, 사고가 만연하거나 확대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1. 즉시 구조를 조직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며, **위협을 받고 있는** 다른 인원을 대피, 철수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하여 보호한다.
2. 위해원(危害源)을 신속히 통제하여 위험화학품의 성질, 사고의 위해 구역 및 위해 정도를 측정한다.
3. 사고가 인체, 동식물, 토양, 수원, 대기에 미치는 현실적 위해와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하여 신속하게 폐쇄, 격리, 세척 소독 등의 조치를 취한다.
4. 위험화학품 환경오염과 생태 파괴 상황을 모니터링, 평가하며 그에 따른 환경오염 관리와 생태 복구 조치를 취한다.
5. 관련 위험화학품 단위는 반드시 위험화학품 사고의 응급구조에 기술 지도와 필요한 협조를 제공해야 한다.
6. 위험화학품 사고가 환경오염을 초래한 경우 구가 설치된 시급 이상 인민정부가 통일적으로 관련 정보를 반포한다.

# 제10장 법률 책임

1. 국가에서 생산, **저장**, 경영, 사용, **운송**을 금지하는 위험화학품을 생산, **저장**, 경영, 사용, **운송**하는 경우 **위험화학품 안전감독관리** 책임부서가 **직책에 따라** 생산, 경영, 사용, **운송** 활동을 정지하고 **불법소득이 있을 경우 불법소득 및 불법으로 생산, 저장, 경영, 사용, 운송한 위험화학품을 몰수하고 불법 생산, 저장, 경영, 사용, 운송에 사용된 도구, 설비, 원료를 몰수하며 불법으로 생산, 저장, 경영, 사용, 운송한 위험화학품의 물품 가치가 10만 위안 미만일 경우 3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물품 가치가 10만위안 이상인 경우 물품 가치 금액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사안이 엄중한 경우 원증서발급기관에서 해당 허가증을 말소하고 위험화학품 안전감독관리 책임부서는 직책에 따라 해당 사안의 주요 책임자, 직접 담당한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자를 공안기관에 이송하여 5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전항에서 규정한 행위가 있을 경우 **위험화학품 안전감독**관리 **책임부서**는 생산, **저장**, 경영, 사용한 위험화학품을 무공해 처리를 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위험화학품의 사용에 관한 국가의 제한성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화학품을 사용한 경우 본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전항에서 규정한 불법 행위에 종사함을 인지한 상황에서 장소나 기타 조건을 제공한 경우 위험화학품 안전감독관리 책임부서가 직책에 따라 불법 행위 중지를 명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타인의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불법으로 생산, 저장, 경영, 사용, 운송한 자와 연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1. **위험화학품 건설 프로젝트의 설계단위, 시공단위, 건설단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성향건설부서는 기한부 시정을 명령하며 10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 시정을 위한 영업 정지를 명령하고, 자격 등급을 강등 내지 허가 취소를 할 수 있으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여 범죄를 구성한 경우 직접 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추궁한다.**
2. **설계단위가 안전생산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정과 국가기준 또는 업계기준을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설계 중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생산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제안하지 아니 하거나, 건의한 조치가 국가표준, 업계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3. **시공단위가 공정설계 요구사항과 국가의 관련 건설공사 안전기준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4. **공정감리를 실행하는 건설 프로젝트에서 건설단위가 시공안전에 대한 감리를 일괄 위탁하지 아니한 경우.**
5. 안전요건 심사를 거치지 않은 위험화학품 생산, **저장, 하역**의 신축, 개조, 증축 건설 프로젝트는 **위험화학품 안전감독 책임부서가 직책에 따라** 건설중단 명령을 내리고, 기한내 시정을 명령하며 **5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기한이 경과하여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100만 위안 이상 20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건설단위에게 이미 건설된 전부 혹은 일부 건설 프로젝트를 철거하도록 명령하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 형사적 책임을 추궁한다.

안전심사를 거치지 않고 위험화학품을 **저장**, 하역하는 항구, **철도** 건설 프로젝트의 신축, 개조, 증축은 항구행정관리부서, **철도감독관리**부서가 전항 규정에 따라 **각자** 처벌한다.

1.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험화학품 안전생산감독관리 책임부서가 직책에 따라 생산, 경영, 사용 활동을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불법소득과 불법으로 생산, 경영, 사용하는 위험화학품을 몰수하며 불법 생산, 경영, 사용에 사용한 도구, 설비, 원료 등의 물품을 몰수하며 불법으로 생산, 경영, 사용한 위험화학품의 가치가 10만 위안 미만인 경우 물품 가치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물품 가치 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물품 가치 금액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사안이 엄중한 경우 위험화학품 안전생산감독관리 책임부서가 공안기관으로 이송하여 그 주요 책임자, 직접 책임진 주관 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5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률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법에 의거하여 위험화학품 안전생산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위험화학품 생산 **경영활동**에 종사한 경우.

(2) 화공기업이 위험화학품 안전**생산** 허가(**사용**)증을 취득하지 아니 하고 위험화학품을 사용하여 생산에 종사한 경우.

공업 제품 생산 허가증을 법에 따라 취득하지 않고 위험화학품 및 그 포장물, 용기 생산에 종사하는 경우 시장 관리 감독 부서에서 전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처벌하다.

**전항에서 규정한 불법행위의 종사함을 인지하면서도 생산운영 장소나 기타 조건을 제공한 경우 현급 이상 응급관리 부서는 불법행위 중지를 명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5만 위원 이상 10만 위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타인에게 손해를 초래한 경우 불법생산사업자와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1.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 **위험화학품 안전생산감독관리 책임**부서에서 **직책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고,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주요 책임자, 직접 담당 임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는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10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사안이 엄중한 경우 시정을 위한 휴업을 명하고 **주요 책임자, 직접적 책임을 부담하는 담당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는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위험화학품 생산，저장 단위가 생산작업단계의 과정 안전관리제도를 수립하지 않고 책임자, 직무직책 및 조작규정을 명확히 하지 아니한 경우**
3. **위험화학품 생산, 저장, 사용, 경영 기업이 종사자에 대한 안전생산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관련 종사자가 본 법에서 규정한 임직 조건 및 자격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4. 위험화학품을 생산, 저장하는 단위가 그가 부설한 위험화학품 배관에 대해 명백한 표지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위험화학품 배관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를 진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위험화학품 배관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공을 실시함에 있어 시행단위가 규정에 따라 배관 소속 단위에 서면 통지하지 않거나, 배관소속 단위와 공동으로 응급대비책을 수립하지 않았고 그에 따른 안전방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배관소속 단위에서 전문요원을 현장에 파견하여 배관안전보호를 지도하지 아니한 경우
6. 위험화학품 생산업체가 화학품 안전기술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 하거나 포장(외포장 부품 포함)에 화학품 안전라벨을 부착 또는 달지 아니한 경우
7. 위험화학품 생산업체에서 제공하는 화학품 안전기술설명서가 그가 제조한 위험화학품에 부합되지 않거나 포장(외포장 부품 포함)에 부착 또는 달아 놓은 화학품 안전라벨이 포장 내 위험화학품과 일치하지 않거나, 화학품 안전기술설명서와 화학품 안전 라벨에 기재된 내용이 국가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8. 위험화학품 생산기업이 그가 생산한 위험화학품의 새로운 위험 특성을 발견한 후 즉시 공지하지 않거나, 해당 화학품 안전기술설명서 및 화학품 안전라벨을 적시에 수정하지 아니한 경우
9. 위험화학품 경영업체가 화학품 안전기술 설명서 및 화학품 안전라벨이 없는 위험화학품을 취급하거나, **화학품 안전기술 설명서 또는 안전라벨을 무단으로 변경하거나, 안전기술 설명서와 화학품 안전라벨을 실제와 부합되지 않게 표시한 경우**
10. 위험화학품 포장물, 용기의 재질 및 포장의 형식과 규격, 방법 및 개별 질량(중량)은 포장된 위험화학품의 성질과 용도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11. 위험화학품을 생산, **저장**, **사용**하는 단위가 작업장소 및 안전시설, 장비에 명백한 안전경고표시를 설치 하지 않았거나 작업장에 통신, 경보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12. **위험화학품 생산, 저장, 사용 단위가 안전리스크연구판단과 확약 공고 제도를 수립하지 않거나 안전리스크 등급별 통제를 실시하지 않고, 상응한 통제 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13. **연구 제조 개발 단위가 위험화학품 신생산공정 개발을 진행함에 있어 안전리스크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양수인에게 안전성 논증 보고서 및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14. **위험화학품을 사용하는 단위가 그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위험화학품 안전기술 설명서를 종사자에게 제공하지 않았고, 종사자에게 정확한 사용법 및 긴급한 상황에 처해야 할 조치를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15. 위험화학품 전문용 창고 관리를 책임지는 전담자를 두지 않았거나, **저장**된 극독화학품 및 재고량 중 중대 위험원으로 구성되는 기타 위험화학품 에 대해 2인 접수-발송, 2인 보관제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16. 위험화학품을 **저장**하는 단위가 위험화학품 입출고 확인 검사, 등록 제도를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
17. 위험화학품 전문용 창고에 명확한 표시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18. 위험화학품 생산기업, 수입기업이 위험화학품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생산, 수입한 위험화학품의 새로운 위험특성을 발견하였으나 위험화학품 등록내용의 변경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거나, **중대 위험원을 구성하는 사업을 경영과 동시에 저장, 사용 업체가 위험화학품 등록을 아니한 경우**
19. **위험화학품 생산기업, 수입기업은 그가 제조, 수입한 위험 특성이 명확하지 않은 화학품에 대해 감정을 실시하지 아니 하거나 위험화학품으로 감정했음에도 불과하고 본 법에 따라 관리하지 않거나 국무원 응급관리부서에 서면으로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20. **위험화학품을 생산, 저장, 사용함과 동시에 중대한 위험원을 구성하는 단위에서 본 단위가 사용하는 위험화학품의 성질, 위해, 영향 범위 및 응급조치를 주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단위(주민)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21. **위험화학품의 생산, 저장, 사용 기업이 국가 기준 또는 업계 기준에 따라 장비자동통제시스템과 안전계기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안전생산정보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여 온라인 안전 모니터링, 조기경보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2. **비안 관리를 실시하는 위험화학품 생산기업이 규정에 따라 비안을 진행하지 아니한 경우**

위험화학품 창고경영 업무에 종사하는 항구사업자에게 전항에서 규정한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항구행정관리부서에서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극독화학품, 폭발물 제조용 위험화학품을 저장하는 전문용 창고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응한 기술방범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공안기관에서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수출입 위험화학품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본조 제1항, 제5항, 제6항, 제9항의 불법 행위를 발견한 경우 세관 주관 부서에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극독화학품, 폭발물 제조용 위험화학품을 생산 및 **저장**하는 단위에서 치안보위기구를 설치하지 않거나 전담 치안보위인력을 배치하지 않을 경우, 기업사업단위 내부의 치안보위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의해 처벌한다.

1. 위험화학품 포장물, 용기 생산업체가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위험화학품 포장물, 용기를 판매하거나, **위험화학품 생산업체에서 사용하는 포장물, 용기가 법률, 행정법규, 규장의 규정 및 국가표준, 업계표준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10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불법소득이 있을 경우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기간 경과 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휴업, 생산 정지 및 시정을 위한 휴업을 명하며 **주요 책임자, 직접 담당 임원,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범죄 구성한 경우 법에 의해 형사적 책임을 추궁한다.

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위험화학품을 운송하는 선박과 그 용기를 사용한 경우 해사관리기관에서 전항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위험화학품 수출입에 대한 점검 과정에서 본조 제1항에서의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세관 주관 부서에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 위험화학품을 생산, **저장**, 사용하는 단위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험화학품 **안전생산감독관리 책임**부서는 **직책에 의해 시정을 명령하고**, **10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주요 책임자, **직접 책임지고 있는 담당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휴업 및 정돈을 명하며 원 허가발급기관에서 관련 허가증을 취소하며, **시장감독**부서에서 경영범위변경등기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취소하며, 범죄 구성 시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2. 중복 사용하는 위험화학품의 포장물, 용기에 대하여 재사용 전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생산, 저장한 위험화학품의 종류와 위험 특성에 따라 작업장에 관련 안전시설, 설비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국가 기준, 업계 기준 또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시설, 설비를 상시 유지하고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4. 본 법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생산조건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5. 위험화학품을 전문용 창고에 **저장**하지 않거나 극독화학품 및 그 **재고량**이 중대 위험원이 되는 기타 위험화학품을 전문용 창고에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6. 위험화학품의 **저장** 방식, 방법 또는 **저장** 수량이 국가 기준에 부합되지 않거나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7. 위험화학품 전문용 창고가 국가 기준, 업계 기준의 요구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8. 위험화학품 전문용창고의 안전시설, 설비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 점검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9. **위험화학품 중대 위험원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 평가를 진행하지 않았거나 문서화 미등록 또는 응급대비책을 제정하지 않거나, 응급구조 조직을 건립하지 않거나, 사고 감시 및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한 경우**
10. **중대 위험원 및 관련 안전조치, 응급조치를 해당 지방인민정부의 위험화학품 안전 감독관리 직책이 있는 부서에 비안을 하지 아니한 경우**

위험화학품 창고 경영에 종사하는 항구 경영인이 전항의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항구 행정 관리 부서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안기관은 시정을 명하며 **1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주요 책임자, 직접 책임 주관인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는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10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요 책임자, 직접적 책임 담당자,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는 5만 위안 이상의 1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극독화학품, 폭발물 제조용 위험화학품을 생산, **저장**, 사용하는 단위가 생산, 저장, 사용한 극독화학품, 폭발물 제조용 위험화학품의 수량, 행방을 사실대로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3. 극독화학품, 폭발물 제조용 위험화학품을 생산, **저장**, 사용하는 단위가 극독화학품, 폭발물 제조용 위험화학품의 분실 또는 도난을 발견하고 즉시 공안 기관에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4. 극독화학품 저장 단위가 극독화학품의 **저장** 수량, 저장 장소 및 관리자의 상황을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공안 기관에 비안하지 아니한 경우
5. 위험화학품 생산업체, 경영업체가 극독화학품, 폭발물 제조용 위험화학품 구매단위의 명칭, 주소, 업무담당자의 이름, 신분증 번호 및 구매한 극독화학품, 폭발물 제조용 위험화학품의 품목, 수량, 용도를 사실대로 기록하지 아니 하거나 판매 기록과 관련 자료 보관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6. 극독화학품, 폭발물 제조용 위험화학품 판매업체, 구매업체가 정한 기한 내에 판매하지 않은 극독화학품, 폭발물 제조용 위험화학품의 종류, 수량 및 동향 정보를 현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에 비안하지 아니한 경우
7. 극독화학품, 폭발물 제조용 위험화학품을 사용하는 단위가 본 법률에 따라 구입한 극독화학품, 폭발물 제조용 위험화학품을 양도한 후, 해당 상황을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에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위험화학품을 생산, **저장**하는 기업 **또는 규정한 종류를** 사용하여 위험화학품을 생산함과 동시에 사용량이 **규정 수량에** 도달한 화학공업 기업이 본**법**의 규정에 따라 안전평가 보고서 및 시정 방안의 이행 상황을 **응급** 관리 부서 또는 항구 행정 관리 부서에 비안하지 아니 하거나, 위험화학품을 **저장**하는 단위가 극독화학품 및 **저장**수량이 중대 위험원을 구성하는 기타 위험화학품의 **저장** 수량, **저장** 장소 및 관리 인원 상황을 **응급**관리부서 또는 항구 행정 관리 부서에 비안하지 아니한 경우 응급관리부서 및 항구 행정 관리 부서에서 전항의 규정에 따라 각각 처벌한다.

1. 위험화학품을 생산, **저장**, 사용하는 단위가 생산 전환, 생산 중단, 영업정지 또는 해산 시 위험화학품 생산장치, 저장시설 및 재고 위험화학품을 적시에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위험화학품을 폐기한 경우 **위험화학품 안전생산감독관리 책임부서**가 **직책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고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주요 책임자, 직접 담당 임원,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추궁한다.

위험화학품을 생산, **저장**, 사용하는 단위가 생산 전환, 생산 중지, 영업정지 또는 해산 시 본 법의 규정에 따라 그 위험화학품 생산장치, **저장**시설 및 재고 위험화학품에 대한 처분 방안을 관련 부서에 비안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부서에서 각각 시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 **1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 **10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1. 위험화학품 경영 기업이 허가 또는 비안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위험화학품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기업으로부터 위험화학품을 구매한 경우, **시장감독관리**부서에서 시정을 명하며 **2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룰 부과하고 **주요 책임자, 직접적 책임 담당자,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서는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원 허가발급기관은 휴업, 정돈 명령 내지 해당 위험화학품 **안전생산**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고 **시장감독**관리부서는 경영범위 변경 등기를 명하거나 영업허가증을 취소한다.
2. 위험화학품 생산업체, 경영업체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응급관리부서**에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요 책임자, 직접 담당 임원과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는**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먀,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원 허가발급기관은 휴업, 정돈 명령 내지 해당 위험화학품 **안전생산**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고 **시장감독**관리부서는 경영범위 변경 등기를 명하거나 영업허가증을 취소하며 **응급관리부서는 주요 책임자, 직접 담당 임원과 기타 직접 책임자를 공안기관에 이송하여 5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 처벌을 내린다.**
3. 본법 **제65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한 관련 허가 또는 증명서류를 보유하지 않은 단위에게 극독화학품, 폭발물 제조용 위험화학품을 판매한 경우
4. 극독화학품 구매허가에 기재한 품종과 수량에 따라 극독화학품을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5. 극독화학품(극독화학품인 농약 제외), 폭발물 제조용 위험화학품을 개인에게 판매한 경우

본법 **제65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관한 허가 및 증명서류를 소지하지 않은 단위가 극독화학품, 폭발물 제조용 위험화학품을 구매하거나 개인이 극독화학품(극독화학품에 속하는 농약 제외), 폭발물 제조용 위험화학품을 구매한 경우, 공안기관은 구입한 극독화학품, 폭발물 제조용 위험화학품을 몰수하고 **5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사안이 엄중한 경우 응급관리부서에서 공안기관에 이관하여 주요 책임자, 직접 담당 임원과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5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 처벌을 내린다.**

극독화학품, 폭발물 제조용 위험화학품을 사용하는 단위가 **본법 제65조의1, 2의** 관련 허가를 취득하지 아니한 단위에게 구매한 극독 화학품, 폭발물 제조용 위험화학품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또는 개인에게 구매한 극독 화학품(극독화학품에 속하는 농약 제외), 폭발물 제조용 위험화학품을 양도한 경우 공안기관은 시정을 명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10만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처하며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생산, 영업중지 및 정돈을 명하며 **응급관리부서에서 공안기관에 이관하여 주요 책임자, 직접 담당 임원과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5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 처벌을 내린다.**

1. **폐기위험화학품을 생산하는 단위가 폐기위험화학품 안전관리제도를 수립하지 아니하였거나, 본법에 따른 안전처리방안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생태환경 주관 부서는 기한내 수정을 명하고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간이 경과 후에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생산 중지, 휴업 정돈을 명하며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주요 책임자, 직접 담당 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폐기위험화학품의 수집, 저장, 처분, 이용, 운송하는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단위가 본법 또는 기타 법률, 행정 법규와 국가 기준 또는 업계 기준에 규정된 안전생산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경우 생태환경 주관 부서에서 생산중지, 휴업 정돈을 명하며, 주요 책임자, 직접 담당 임원과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생산중지, 휴업정돈을 진행하지 아니 하거나 생산중지, 휴업정돈을 진행한 후에도 여전히 안전생산 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생태환경주관부서가 현급 이상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국무원에서 규정한 권력에 따라 폐쇄 및 관련부서는 법에 의해 관련 허가를 취소한다.**

1. 위험화물 도로, 수로, **철도, 항공운송의 허가 또는 비안을** 적법하게 취득하지 않았거나 위험화학품 도로운송, 수로운송, **철도운송, 항공운송에** 종사하는 자는 각각 도로운송, 수로운송에 관한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한다.
2.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교통운송 주관 부서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10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주요 책임자, 직접적 담당 임원과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시정을 거부할 경우 휴업, 정돈을 명하고 범죄 구성 시 법에 따른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3. 위험화학품 도로 운송기업, 수로 운송기업의 운전자, 선원, 하역 관리자, 호송인원, 신고인원, 컨테이너 정장 현장 검사원이 업무 종사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4. 위험화학품을 운송 시, 위험화학품의 위험 특성에 따라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필요한 방호용품 및 응급구조기자재를 준비하지 않은 경우
5. 적법한 위험화물적재적격증명서를 취득하지 않은 선박을 사용하여 위험화학품을 내륙 하천에서 위험화학품을 운송한 경우
6. 하천을 통해 위험화학품을 운송하는 운송인이 국무원 교통운송주관 부서가 단일 선박으로 운송하는 위험화학품 수량 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화학품을 운송한 경우
7. 위험화학품 운송작업에 사용되는 내륙 하천 부두, 정박 위치가 국가의 관련 안전규범에 부합되지 않거나, 음용수 취수구와 국가가 규정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거나 교통운송주관 부서의 점검 및 점검에 불합격한 상황에서 투입하여 사용한 경우
8. 송하인은 탁송된 위험화학품의 종류, 수량, 위험 특성 및 발생 위험 상황에 대한 응급 처치를 운송인에게 설명하지 않거나,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위험화학품을 적절하게 포장하지 않거나 겉포장에 해당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9. 위험화학품을 운송할 경우 억제제 또는 안정제를 첨가해야 하며, 송하인이 첨가하지 않거나 해당 사실을 운송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
10. **도로를 통해 위험화학품을 운송할 경우 충전 단위가 운송 차량의 승인된 적재 품질에 따라 위험화학품을 적재하지 않은 경우**
11. **위험화학품 도로 운송 운송자는 위치추적시스템을 통해 운영중인 위험화학품 운송 차량을 감시, 모니터링, 조기경보를 진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위험화학품의 하역 작업이 안전 작업 기준, 규정 및 제도에 부합하지 않거나 하역 관리자가 현장에서 지휘 혹은 감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한 경우**
13. **운송업체와 충진업체가 운송차량, 탱크의 안전기술점검 유효기간 여부, 또는 경고표지를 설치, 부착, 달거나 페인팅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14. **위험화학품 운송 차량과 그 탱크가 국가 표준의 안전 기술 요건에 부합되지 아니 하거나, 국가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세척 및 안전 기술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15.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운송 주관 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20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주요 책임자, 직접적 책임 담당자,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휴업, 정돈을 명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추궁한다.
16. 위험화물 도로운송 허가, 위험화물 수로운송 허가 등을 법적으로 취득하지 않은 기업에 위험화학품의 운송을 의뢰한 경우
17. 내륙 하천 밀폐 수역을 통하여 극독화학품 및 국가에서 내륙하천 운송을 금지한 기타 위험화학품을 운송한 경우
18. 내륙 하천을 통하여 국가에서 내륙하천 운송을 금지한 극독화학품 및 기타 위험화학품을 운송한 경우
19. 위험화학품을 탁송된 일반 화물에 끼워 넣거나, 일반 화물로 속여서 신고하거나 일반 화물로 탁송한 경우.

**적법하게 위험 화물 철도, 항공 운송 허가 또는 비안을 취득하지 않은 업체에 위험화학품의 운송을 의뢰한 경우, 철도감독관리부서와 민항부서에서 각각 본 법에 의해 처벌한다.**

**개인이 위험화학품을 휴대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관련 업계 주관 부서에서 500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추궁한다.**

1.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안기관은 시정을 명하고, **10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주요 책임자, 직접 담당 임원에게는 1만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치안관리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치안관리 처벌을 내리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추궁한다.
2. 운송 차량의 규정 적재 질량을 초과하여 위험화학품을 적재한 경우
3. 안전기술의 사용조건이 국가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차량으로 위험화학품을 운송한 경우
4. 위험화학품 운송 차량이 공안기관의 허가 없이 위험화학품 운송 차량의 통행이 제한된 구역에 진입한 경우
5. 극독 화학품 도로수송통행증을 취득하지 않은 상황에서 도로운송으로 극독 화학품을 운송한 경우

우편물, 택배 내에 위험화학품을 끼워 넣거나 위험화학품을 일반 물품으로 속여 발송한 경우 법에 따라 치안관리 처벌을 내리고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추궁한다.

우편업체, 택배업체가 위험화학품을 **불법**적으로 송부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우정법>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안기관이 명을 내려 **시정하며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요 책임을 지는 담당자 및 기타 직접 담당인원에게 2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치안 관리 행위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치안관리 **구류 처벌을 내린다**.
2. 위험화학품 질 운반 차량이나 그 **탱크**에 경고 표지를 부착, 매달거나 분무하지 않거나 경고 표지가 국가 표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3. 위험한 화학품을 도로로 운송 시 호송인원을 구비하지 않을 경우
4. 극독 화학품 또는 폭발물 제조용 위험화학품을 운송하는 도중에는 비교적 긴 시간 주차를 해야 할 경우 운전원, 호송자가 현지 공안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5. 극독 화학품, 폭발물 제조용 위험화학품이 도로 운송 중에 분실, 도난, 강탈 또는 유실, 누출의 경우 운전자, 호송자가 필요한 경고조치와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현지 공안기관에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6. 교통사고에 대한 전체 책임 또는 주요 책임이 있는 위험화학품 도로 운송기업에 대하여 **소속 현급** 공안기관이 안전상 위험 요소 제거를 명하고 안전상 위험이 제거되지 않은 위험화학품 운송 차량은 도로 운행이 **금지되며 무단으로 도로 주행 시에는 공안기관이 그 주요 책임자, 주요 책임 담당자 및 기타 직접 담당인원에게5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 처벌을 내린다**.
7.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운송 주관 부서는 시정을 명하고 **5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8. 위험화학품 도로 운송기업, 수로 운송 기업이 안전관리 전담인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9. 위험화학품 운송작업에 사용되는 하안 부두, 정박 위치의 관리단위가 부두, 정박지 위험화학품 사고 응급대비책을 마련하지 않거나, 부두, 정박지를 위해 충분하고 효과적인 응급구원기자재와 설비를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10. 다음의 상황이 존재할 경우 **내륙하천교통안전관리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한다.
11. 위험화학품을 내륙 하천을 통하여 운송하는 수로 운송업체에서 운송 선박의 위험화학품 사고에 대한 응급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았거나 운송 선박을 위해 충분하고 효율적인 응급구조 기자재와 장비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12. 위험화학품을 내륙 하천을 통하여 운송하는 선박의 소유인 또는 경영인이 선박오염손해책임보험 증서 또는 재무담보증명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13. 선박이 위험화학품을 적재하고 내륙 하천 항구로 출입 시, 관련 사항을 미리 해사관리기구에 보고하여 동의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
14. 위험화학품을 적재한 선박이 내륙 하천에서 항행, 하역 또는 정박 시, 전문용 경고 표지를 달지 않거나, 전문용 신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규정에 따라 인항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항구의 행정관리 부서에 보고하지 않고 항구에서 위험화학품의 하역과 바지선 하역작업을 진행한 경우 <항구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 위험화학품 안전생산 허가증, 공업상품 생산 허가증을 위조, 변조 또는 임대, 대여하거나 위조, 변조된 위험화학품 안전생산허가증, 공업제품생산허가증을 사용한 경우, 각각 안전생산 허가증, 중화인민공화국 공업제품생산허가증 관리 법률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본법에 따른 기타 허가증을 위조, 변조 또는 대여, 양도하거나 또는 위조, 변조한 **본법**에 따른 기타 허가증을 사용한 경우, 해당 허가증의 발급 관리 기관으로부터 각각 **20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불법소득이 있을 경우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치안 관리를 위반한 행위는 법에 의해 치안관리처벌을 처하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위험화학품 단위에 위험화학품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주요 책임자가 즉시 구조를 조직하지 않았거나 관련 부서에 즉시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안전사고의 보고와 조사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한다.

위험화학품 업체에 위험화학품사고가 발생하여 타인의 상해， **사망** 또는 재산 손실을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진다.

1. **관련 부서와 개인이 본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관련 부서가 그에 대하여 법 집행 빈도를 높이고, 프로젝트 심사 비준을 잠시 중단하며, 관련 보험요율을 인상하고, 업계 또는 직업 진입 금지 등의 합동 징계 조치를 실시하여 사회에 공시한다.**
2. **위험화학품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험 상황 발생 시 위험화학품 단위의 작업 현장 근무 인도자, 반장, 관리자가 즉시 생산 중지와 인원 철수를 명령하지 아니하고, 위험에 처한 인원의 철수를 지휘하지 않았거나 제때에 철수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관련자에게 법률적 책임을 가중하여 추궁한다.**

위험화학품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지방인민정부와 관련 부서가 즉각 구원을 조직하지 않거나, 필요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아 사고 피해를 감소시키고, 사고가 만연하거나,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필요한 응급처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직접 책임 담당 임원과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처벌하고,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1. 위험화학품 안전감독관리 책임부서의 직원이 위험화학품 안전감독 업무에서 직권을 남용, 직무 유기, 사리도모로 인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하고, 범죄의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처분한다.

# 제11장 부칙

1. 독품 제조용 화학품, 위험화학품에 속하는 모니터링 화학품, 약품과 농약, **수의약**의 안전관리는 본**법**의 규정에 따라 집행하며 법률, 행정 법규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르도록 한다.

민간용 폭발물, 폭죽, **도시가스**, 방사성물질, 원자력물질, **방산화물, 국가 의약품의 기준 물질에 속하는** 위험화학품의 안전관리는 본 **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도시**가스, **배관운송석유**, **천연가스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법률, 행정 법규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르도록 한다.

위험화학품 용기**와** **배관**은 특수설비에 속하며 그 안전관리는 특수설비 안전에 관한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다.

1. 위험화학품의 수출입관리는 대외무역에 관한 법률, 행정법규, 규약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하고, 수입한 위험화학품의 **저장**, 사용, 경영, 운송의 안전관리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다.

새로운 화학품질 환경관리 등록은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행정법규, 규장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위험화학품의 **감정, 분류, 등기와** 신화학품 환경관리 등록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비용을 수금한다.

1. 본 **법**상의 중대 위험원이라 함은 위험화학품을 **장기간 또는 임시로** 생산, **저장**, 사용, **경영**하고 위험화학품의 수량이 임계량과 같거나 초과하는 단원(장소 및 시설 포함)을 의미한다.
2. 본 법은 20년 [ ]월[ ]일부터 시행된다.

**中华人民共和国危险化学品安全法**

**（征求意见稿）**

第一章 总则

第一条 为了加强危险化学品的安全管理，预防和减少危险化学品事故，坚持人民至上、生命至上，保护人民生命安全和身体健康，保护环境，推进危险化学品安全生产治理体系和治理能力现代化，制定本法。

第二条 危险化学品生产、贮存、使用、经营、运输和废弃处置的安全管理，适用本法。

废弃危险化学品的处置，有关环境保护的法律、行政法规和国家有关规定另有规定的，适用其规定。

第三条 本法所称危险化学品，是指具有毒害、腐蚀、爆炸、燃烧、助燃等性质，对人体、设施、环境具有危害的剧毒化学品和其他化学品。

国家对危险化学品实施目录管理。危险化学品目录以及危险化学品确定原则，由国务院应急管理部门会同国务院工业和信息化、公安、生态环境、卫生健康、市场监管、交通运输、农业农村、海关主管部门，根据化学品危险特性的鉴定、分类标准和国家安全管理的实际需要确定、公布，并适时调整。

第四条 危险化学品安全管理，应当坚持管行业必须管安全、管业务必须管安全、管生产经营必须管安全，坚持安全第一、预防为主、综合治理的方针，坚持谁主管谁负责、谁审批谁监管、谁建设谁负责，强化和落实生产、贮存、使用、经营、运输和废弃处置危险化学品的单位（以下统称危险化学品单位）的主体责任与地方属地监管责任，建立生产经营单位负责、职工参与、政府监管、行业自律和社会监督的机制。

危险化学品单位应当实行全员安全生产责任制，加强安全风险管控与隐患排查治理，开展安全生产标准化等安全管理体系建设，对从业人员进行安全生产教育和培训，提高本质安全水平，其主要负责人对本单位的危险化学品安全生产工作全面负责。有危险化学品生产装置，以及带贮存设施且构成重大危险源的危险化学品单位和危险化学品运输企业应当投保安全生产责任保险。

危险化学品单位应当具备法律、行政法规规定和国家标准、行业标准要求的安全条件，建立、健全安全管理规章制度和岗位安全生产责任制度，依法设置安全生产管理机构和配备安全管理人员，制定并落实安全生产教育和培训计划，对从业人员进行安全教育、法制教育和岗位技能培训。从业人员应当接受教育和培训，考核合格后上岗作业；对有资格要求的岗位，应当配备依法取得相应资格的人员。

第五条 任何单位和个人不得生产、贮存、经营、使用、运输国家禁止生产、贮存、经营、使用、运输的危险化学品。

国家对危险化学品的使用有限制性规定的，任何单位和个人不得违反限制性规定使用危险化学品。

相关企业、事业单位因科研需要使用国家限制使用的危险化学品时，应当严格按照国家有关规定执行。

国家禁止和限制生产、贮存、经营、使用、运输的危险化学品目录由国务院工业和信息化部门、交通运输部门会同有关部门制定并公布。各省、自治区、直辖市可以结合本地实际情况制定本地区禁止和限制生产、贮存、经营、使用的危险化学品目录，但不得影响过境运输。

第六条 县级以上地方各级人民政府应当加强对危险化学品安全工作的领导，落实本地区安全生产责任制和属地监管责任，防范化解重大安全风险，全面提升安全发展水平。

对危险化学品的生产、贮存、使用、经营、运输和废弃处置实施安全监督管理的有关部门（以下统称负有危险化学品安全监督管理职责的部门），依照下列规定履行职责：

（一）应急管理部门负责组织确定、公布、调整危险化学品目录，依法对新建、改建、扩建生产、贮存危险化学品（包括使用长输管道输送危险化学品，下同）建设项目进行安全审查（审查内容包括安全条件和安全设施设计），核发危险化学品安全生产（含安全使用和安全经营）许可证或者实施备案管理，负责危险化学品登记工作，组织危险化学品事故应急处置；承担指导协调、督促检查、巡查考核其他负有危险化学品安全生产监督管理职责的部门依法落实危险化学品安全生产监督管理职责等危险化学品安全监督管理综合工作；

（二）公安机关负责危险化学品的公共安全管理和可用于制造爆炸物品的危险化学品（以下简称易制爆危险化学品）、剧毒化学品的流向监管，核发剧毒化学品购买许可证、剧毒化学品道路运输通行证，并负责危险化学品运输车辆的道路交通安全管理，对危险化学品道路交通事故现场实施外围交通管控；

（三）市场监管部门负责核发纳入工业产品生产许可证目录管理的危险化学品及其包装物、容器（不包括贮存危险化学品的固定式大型储罐，下同）生产企业的工业产品生产许可证，并依法对其检验检测和产品质量实施监督，负责对危险化学品压力管道和压力容器安装、使用和检验、检测实施监督管理，核发危险化学品生产、贮存、经营、使用、贮存、运输和危险化学品废弃处置（含危废品中转贮存、危废品处置）企业营业执照，查处各类市场主体违法经营危险化学品的行为；

（四）生态环境主管部门承担废弃危险化学品处置环节相关安全监管责任，依法对危险废物的收集、贮存、处置等进行监督管理，依照职责分工调查相关危险化学品环境污染事故和生态破坏事件，负责危险化学品事故现场的应急环境监测；

（五）交通运输主管部门负责危险化学品道路运输、水路运输的许可或者备案，以及运输工具（包括对危险化学品运输车辆清洗等作业）、装卸作业的安全管理，负责港区内危险化学品贮存、装卸和仓储经营的港口企业的安全监管，对危险化学品水路运输安全实施监督，负责危险化学品道路运输企业、水路运输企业驾驶人员、船员、装卸管理人员、押运人员、申报人员、集装箱装箱现场检查员的资格认定，铁路监管部门负责危险化学品铁路运输及其运输工具的安全监督管理，民航部门负责危险化学品航空运输以及航空运输企业及其运输工具的安全管理，邮政管理部门负责危险化学品寄递安全管理，依法查处违法寄递危险化学品的行为；

（六）卫生健康部门负责其主管的医疗卫生机构贮存、使用危险化学品实施安全监管，负责组织、协调危险化学品事故受伤人员的医疗卫生救援工作；

（七）自然资源部门负责将危险化学品建设项目所在的化工园区、贮存危险化学品的集中区域和周边安全控制距离等有关内容统筹纳入当地国土空间规划，并监督实施；

（八）工业和信息化部门负责危险化学品行业发展规划的制定并组织实施，组织制定国家禁止和限制生产、贮存、经营、使用的危险化学品目录，以及化工园区的设立及其建设标准、入园条件和管理办法，并推动落后工艺、产能和高风险危险化学品企业退出；

（九）住房城乡建设部门负责危险化学品建设项目工程质量、消防设施设计审查、施工和验收的安全，组织制定涉及危险化学品的工程建设国家标准；

（十）海关主管部门负责进出口危险化学品的口岸管理工作，对进出口危险化学品及其包装实施检验；

（十一）其他部门依照各自职责对有关行业领域的危险化学品履行安全生产监督管理职责。

第七条 负有危险化学品安全监督管理职责的部门依法进行监督检查，有权采取下列措施：

（一）进入危险化学品作业场所实施现场检查，向有关单位和人员了解情况，查阅、复制有关文件、资料；必要时，可以对危险化学品实施抽样检测；

（二）发现危险化学品安全与环境隐患，责令立即消除或者限期消除；

（三）对不符合法律、行政法规、规章规定或者国家标准、行业标准要求的设施、设备、装置、器材、运输工具，责令立即停止使用；

（四）查封违法生产、贮存、使用、经营危险化学品和废弃危险化学品处置的场所，扣押违法生产、贮存、使用、经营、运输的危险化学品以及用于违法生产、使用、运输危险化学品的原材料、设备、运输工具；

（五）发现影响危险化学品安全的违法行为，当场予以纠正或者责令限期改正；

（六）发现依法应当由其他部门处理的违法行为，及时移交其他部门处理，并作好书面记录；

负有危险化学品安全监督管理职责的部门依法进行监督检查，监督检查人员不得少于2人，并应当出示执法证件；有关单位和个人对依法进行的监督检查应当予以配合，不得拒绝、阻挠。

第八条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建立危险化学品安全监督管理工作协调机制，支持、督促负有危险化学品安全监督管理职责的部门依法履行职责，协调、解决危险化学品安全监督管理工作中的重大问题。

负有危险化学品安全监督管理职责的部门应当相互配合、密切协作、信息共享，依法加强对危险化学品的安全监督管理。

第九条 任何单位和个人对违反本法规定的行为，有权向负有危险化学品安全监督管理职责的部门举报。负有危险化学品安全监督管理职责的部门接到举报，应当及时依法处理；对不属于本部门职责的，应当依法告知举报人或者及时移送有关部门处理；有关部门应当接受，并及时处理。

县级以上人民政府有关部门应当建立危险化学品违法行为举报奖励机制。对举报人特别是内部举报人举报所在单位违法行为并经查证属实的给予奖励，并对举报人的信息进行严格保护。

第十条 国务院工业和信息化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建立危险化学品信息管理系统，对危险化学品实行电子标识和全生命周期信息化管理。

第十一条 国家鼓励危险化学品生产、贮存、使用、经营、运输、废弃处置企业采用有利于提高本质安全和安全保障水平的先进技术、工艺、设备以及自动控制系统，鼓励对危险化学品实行专门贮存、统一配送、集中销售。

第十二条 生产、贮存、使用危险化学品的单位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对危险化学品重大危险源登记建档，进行定期检测、评估、实时监控，制定应急预案，建立安全监测预警系统，并将重大危险源及有关安全措施、应急措施报有关地方人民政府主管的负有危险化学品安全生产监督管理职责的部门备案。

负有危险化学品安全生产监督管理职责的部门应当建立安全风险监控预警系统，分级分类定期对危险化学品重大危险源开展专项监督检查，及时消除事故隐患，防范重特大事故发生。

第十三条 各级人民政府对危险化学品安全生产工作做出突出成绩的单位、行业组织和个人,实施奖励。

第二章 登记和鉴定

第十四条 国家实行危险化学品登记制度，对符合危险化学品确定原则的化学品进行登记，为危险化学品安全管理以及危险化学品事故预防和应急救援提供技术、信息支持。

国家对研究开发、试产试销、低量、低释放和低暴露、聚合物等危险化学品免予登记。具体办法由国务院应急管理部门会同国务院工业和信息化、公安、生态环境、卫生健康、农业农村等部门确定公布，并适时调整。

第十五条 危险化学品生产企业、进口企业应当向国务院应急管理部门负责危险化学品登记的机构（以下简称危险化学品登记机构）办理危险化学品登记。

危险化学品登记包括下列内容：

（一）分类和标签信息；

（二）物理、化学性质；

（三）主要用途；

（四）危险特性；

（五）贮存、使用、运输、废弃处置的安全要求；

（六）出现危险情况的应急处置措施；

对同一企业生产、进口的同一品种的危险化学品，不进行重复登记。危险化学品生产企业、进口企业发现其生产、进口的危险化学品有新的危险特性或者登记事项发生变更的，应当及时向危险化学品登记机构办理登记内容变更手续。

危险化学品登记的具体办法由国务院应急管理部门制定。

第十六条 化学品的危险特性尚未确定的，由国务院应急管理部门、国务院生态环境主管部门、国务院卫生主管部门分别负责组织危险化学品分类鉴别机构对该化学品的物理危险性、环境危害性、毒理特性进行鉴定。根据鉴定结果需要调整危险化学品目录的，依照本法第三条第二款的规定办理。

危险化学品分类鉴别机构应当具备国家规定的相应能力。根据鉴定结果，属于危险化学品的，应当依照本法进行登记和管理。危险特性未在危险化学品目录中载明的，应当及时书面报告国务院应急管理部门。

危险化学品生产企业、进口企业应当对其生产、进口的尚未明确危险特性的化学品进行鉴定。

海关主管部门发现尚未明确危险特性的化学品，应当拒绝有关单位报关，并及时通报同级应急管理部门。

化学品的危险特性尚未确定的，企业不得擅自从事生产、经营、贮存、使用、运输等活动。

第十七条 危险化学品登记机构应当建立危险化学品登记信息数据库，纳入危险化学品管理信息系统，向公安、工业和信息化、自然资源、生态环境、卫生健康、交通运输、农业农村、自然资源、海关、市场监管等部门开放危险化学品登记信息数据库查询功能，并向社会公开已经登记的危险化学品安全技术说明书相关信息和应急咨询电话。

第十八条 危险化学品生产企业、进口企业应当提供与其生产、进口的危险化学品相符的中文化学品安全技术说明书，并在危险化学品包装（包括外包装件）上粘贴或者拴挂与包装内危险化学品相符的化学品安全标签。化学品安全技术说明书和化学品安全标签所载明的内容应当符合国家标准的要求。

危险化学品生产企业、进口企业发现其生产或者进口的危险化学品有新的危险特性的，应当立即公告，及时修订其化学品安全技术说明书和化学品安全标签。

第三章 规划布局

第十九条 国家建立由国务院发展改革部门、工业和信息化部门、自然资源部门、生态环境主管部门、住房城乡建设部门和应急管理部门组成的国家化工产业发展规划编制协调沟通机制，对危险化学品的生产、贮存实行统筹规划、合理布局。

国务院工业和信息化部门以及国务院其他有关部门依据各自职责，在编制危险化学品生产、贮存的行业规划、产业规划和区域布局时，应当进行安全评估，对产业定位、规划布局、经济规模、企业准入条件等提出措施建议。

地方人民政府组织编制国土空间规划时，应当根据本地区的实际情况，按照确保安全的原则，规划适当区域专门用于危险化学品的生产、贮存，并与周边建筑物、构筑物保持符合国家规定的安全距离。

贮存数量构成重大危险源的危险化学品贮存设施的选址，应当避开地震活动断层和容易发生洪灾、地质灾害的区域。

第二十条 化工园区应当符合国家、区域、省和设区的市级人民政府化工产业发展规划要求，符合国土空间规划相关要求。

化工园区的设立应当提交安全风险评估报告、规划环境影响评价报告书，编制应急预案，并按照管理权限报国务院或者省级人民政府批准。

化工园区应当建立危险化学品信息管理系统，对园区内企业、重点场所、重大危险源、基础设施实施风险监控预警。化工园区的建设标准、认定条件和管理办法由国务院工业和信息化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制定。

第二十一条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应当按照绿色发展、安全发展、高质量发展的要求，坚持科学规划、集中布置、合理布局、产业关联、基础设施和公用工程配套完善的原则，依法规划和建设化工园区。

新建危险化学品生产建设项目应当进入化工园区，资源类和为其他行业配套的危险化学品建设项目除外。

第二十二条 设区的市级人民政府应当每5年至少对本地区的化工园区开展一次安全风险评估和规划环境影响评估，发现不可接受风险时，及时采取措施，削减风险，确保区域安全风险可接受。

当化工园区内危险化学品品种、数量、布局等发生变化，需要调整化工园区风险控制条件时，应当及时组织开展化工园区安全风险评估和规划环境影响评估，并修订相关应急预案。具体办法由国务院工业和信息化部门、生态环境主管部门分别制定。

第二十三条 化工园区与城市建成区、人员密集场所、重要设施、敏感目标等应当保持符合相关法律、行政法规及国家标准的安全距离。化工园区安全生产管理机构应当依据化工园区整体性安全风险评估结果和相关法规标准的要求，划定化工园区周边土地规划安全控制线，并报送化工园区所在地自然资源部门、应急管理部门。自然资源部门应当将有关内容统筹纳入当地国土空间规划。

化工园区所在地设区的市级和县级地方人民政府自然资源部门应当严格控制化工园区周边土地规划安全控制线内的土地开发利用，土地规划安全控制线范围内的开发建设项目应当经过安全风险评估，满足安全风险控制要求。

第二十四条 交通运输主管部门应当加强危险化学品运输安全保障，对涉及危险化学品贮存、装卸、运输的物流园区、集中停车区域，以及高速公路服务区的加油（气）站、危险化学品车辆临时停放区域等进行规划。

第二十五条 危险化学品生产装置或者贮存数量构成重大危险源的危险化学品贮存设施，与下列场所、设施、区域的安全距离应当符合国家有关规定：

（一）居住区以及商业中心、公园等人员密集场所；

（二）学校、医院、影剧院、体育场（馆）等公共设施；

（三）饮用水源、水厂以及水源保护区；

（四）车站、码头（依法经许可从事危险化学品装卸作业的除外）、机场以及通信干线、通信枢纽、铁路线路、道路交通干线、水路交通干线、地铁风亭以及地铁站出入口；

（五）生态保护红线、永久基本农田、基本草原、畜禽遗传资源保护区、畜禽规模化养殖场（养殖小区）、渔业水域以及种子、种畜禽、水产苗种生产基地、野生动物重要栖息地；

（六）河流、湖泊、水库、自然保护地；

（七）军事禁区、军事管理区；

（八）法律、行政法规规定的其他场所、设施、区域。

已建的危险化学品生产装置或者贮存数量构成重大危险源的危险化学品贮存设施不符合前款规定的，由所在地设区的市级人民政府工业和信息化部门、应急管理部门会同有关部门监督其所属单位在规定期限内进行整改；需要转产、停产、搬迁、关闭的，由本级人民政府决定并组织实施。

第四章 生产和贮存安全

第二十六条 新建、改建、扩建生产、贮存危险化学品的工程项目（以下统称危险化学品建设项目）的安全设施，必须与主体工程同时设计、同时施工、同时投入生产和使用。安全设施投资应当纳入建设项目概算。

第二十七条 危险化学品建设项目安全设施的设计单位及其设计人员应当对安全设施设计负责。危险化学品建设项目的安全设施设计应当提出保障安全的措施建议。

施工单位应当按照国家有关建设工程安全标准以及经有关部门审查的安全设施设计施工，并对工程质量和施工安全负责；实行工程监理的危险化学品建设项目，建设单位应当对安全设施施工安全一并委托监理。

建设单位应当组织对安全设施进行验收，验收合格方可投入生产和使用。

第二十八条 新建、改建、扩建生产、贮存危险化学品的建设项目应当由应急管理部门进行安全审查。

建设单位应当委托具备国家规定的资质条件的机构对建设项目进行安全评价，并将安全评价的情况报告建设项目所在地设区的市级以上人民政府应急管理部门；应急管理部门应当自收到报告之日起20个工作日内作出审查决定，并书面通知建设单位。具体办法由国务院应急管理部门制定。

港口、铁路中的新建、改建、扩建贮存、装卸危险化学品建设项目，分别由港口、铁路行政管理部门进行安全条件审查。具体办法分别由港口行政管理部门、铁路监管部门制定。

第二十九条危险化学品生产、贮存企业应当建立安全风险研判与承诺公告制度，确认本单位存在的安全风险，实施安全风险分级管控，采取相应的安全管控措施，并向社会公开承诺和公告。

危险化学品生产、贮存企业的工艺、设施、设备、原料等发生重大变更时应当重新进行安全风险评估。

危险化学品单位应当通过技术改造淘汰落后产能，不得使用国家明令淘汰的危及安全生产的工艺、技术及其设备设施，具体目录由国务院应急管理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制定并公布。

第三十条危险化学品生产、贮存企业应当建立包括工艺操作、特殊作业、开停车和检维修等全部生产作业环节在内的过程安全管理制度，明确责任人、岗位职责和操作规程，并组织有效实施，加强过程安全管理。

第三十一条 生产、贮存危险化学品的单位在公共区域埋地、地面和架空、铺设的危险化学品输送管道及其附属设施的安全管理，应当符合法律、行政法规和国家标准或者行业标准的有关规定。

禁止光气、氯气等剧毒危险化学品管道穿（跨）越公共区域。严格控制氨、硫化氢等有毒气体的危险化学品管道穿（跨）越公共区域，确需穿（跨）越公共区域的，应当由具备资质的安全评价机构进行专项安全评价。

第三十二条 生产、贮存危险化学品的单位，应当对其铺设的危险化学品管道设置明显标志，并对危险化学品管道定期检查、检测、巡护。

进行可能危及危险化学品管道安全的施工作业，施工单位应当在开工的7日前将施工方案书面通知管道所属单位，并与管道所属单位共同制定应急预案，采取相应的安全防护措施。管道所属单位应当指派专门人员到现场进行管道安全保护指导。

第三十三条 通过管道运输石油天然气的，应当遵守石油天然气管道保护等有关法律、行政法规和国家标准或者行业标准的规定。

第三十四条 研制开发单位进行危险化学品新工艺、新技术开发，应当开展安全风险评估，并加强研制过程的安全管理，确保研制开发过程安全。

研制开发单位转让危险化学品新工艺、新技术时，应当提供新工艺、新技术的安全论证报告及相关资料。

第三十五条 危险化学品生产、贮存企业主要负责人、分管安全生产负责人应当具有化工相关类专业大专及以上学历和3年以上实践经验，专职安全管理人员应当具有中级及以上化工相关类专业技术职称或者化工安全类注册安全工程师资格，新招一线岗位从业人员应当具有化工职业教育背景或者普通高中及以上学历并接受危险化学品安全培训，经考核合格后方能上岗。

第三十六条 生产危险化学品的企业进行正式生产前，应当依照《安全生产许可证条例》的规定，取得危险化学品安全生产许可证（生产）。

危险程度较低、工艺路线简单且不涉及化学反应的危险化学品生产企业不需要取得危险化学品安全生产许可证，由县级人民政府应急管理部门实施备案管理，但构成重大危险源的除外，具体办法由国务院应急管理部门制定。

生产列入国家实行生产许可证制度的工业产品目录的危险化学品的企业，应当依照《中华人民共和国工业产品生产许可证管理条例》的规定，取得工业产品生产许可证。

负责颁发危险化学品安全生产许可证、工业产品生产许可证的部门，应当将其颁发许可证的情况及时向社会公告，涉及国家秘密、商业秘密和个人隐私的信息除外。

第三十七条 危险化学品的包装、容器应当符合法律、行政法规、规章的规定以及国家标准、行业标准的要求，并经检验合格；未经检验或者经检验不合格的，危险化学品包装物、容器生产企业不得销售。

危险化学品包装物、容器的材质以及危险化学品包装的型式、规格、方法和单件质量（重量），应当与所包装的危险化学品的性质和用途相适应。

第三十八条 生产列入国家实行生产许可证制度的工业产品目录的危险化学品包装物、容器的企业，应当依照《中华人民共和国工业产品生产许可证管理条例》的规定，取得工业产品生产许可证；其生产的危险化学品包装物、容器经国务院市场监管部门认定的检验机构检验合格，方可出厂销售。

运输危险化学品的船舶及其配载的容器，应当按照国家船舶检验规范进行生产，并经海事管理机构认定的船舶检验机构检验合格，方可投入使用。

对重复使用的危险化学品包装物、容器，使用单位在重复使用前应当进行检查；发现存在安全隐患的，应当及时维修或者更换。使用单位应当对检查情况作出记录，记录的保存期限不得少于2年。

第三十九条 危险化学品的生产、贮存企业应当根据国家标准或者行业标准的规定，装备自动控制系统和安全仪表系统，建立安全监测预警系统，实现信息化安全监测、监控和预警，并与政府有关部门安全监测预警系统逐步实现互联互通。

第四十条 生产、贮存危险化学品的单位，应当根据其生产、贮存的危险化学品的种类和危险特性，在作业场所设置相应的监测、监控、通风、防晒、调温、防火、灭火、防爆、泄压、防毒、中和、防潮、防雷、防静电、防腐、防泄漏以及防护围堤或者隔离操作等安全设施、设备，并按照国家标准、行业标准或者国家有关规定对安全设施、设备进行经常性维护、保养，保证安全设施、设备的正常使用。

生产、贮存危险化学品的单位，应当在其作业场所和安全设施、设备上设置明显的安全警示标志。

第四十一条 生产、贮存危险化学品的单位，应当在其作业场所设置通信、报警装置，并保证处于适用状态。

第四十二条 生产、贮存、装卸危险化学品的企业，应当委托具备国家规定的资质条件的机构，对本企业的安全生产条件每3年进行一次安全评价，提出安全评价报告。安全评价报告的内容应当包括对安全生产条件存在的问题进行整改的方案，并提出结论性意见。

生产、贮存危险化学品的企业，应当将安全评价报告以及整改方案的落实情况报所在地县级人民政府应急管理部门备案。在港区内贮存危险化学品的企业，应当将安全评价报告以及整改方案的落实情况报港口行政管理部门备案。

第四十三条 生产、贮存剧毒化学品或者国务院公安部门规定的易制爆危险化学品的单位，应当如实记录其生产、贮存的剧毒化学品、易制爆危险化学品的数量、流向，并采取必要的安全防范措施，防止剧毒化学品、易制爆危险化学品丢失或者被盗；发现剧毒化学品、易制爆危险化学品丢失或者被盗的，应当立即向当地公安机关报告。

生产、贮存剧毒化学品、易制爆危险化学品的单位，应当设置治安保卫机构，配备专职治安保卫人员。

第四十四条 危险化学品应当贮存在专用仓库、专用场地或者专用贮存室（以下统称专用贮存场所）内，并由专人负责管理；剧毒化学品应当在专用贮存场所内单独存放，实行双人收发、双人保管制度，收发记录应当保存3年。

危险化学品罐区的安全管理按照国家相关规定执行。

危险化学品的贮存方式、方法以及贮存数量应当符合国家标准或者国家有关规定。

第四十五条 贮存危险化学品的单位应当建立危险化学品出入库核查、登记制度。

对剧毒化学品以及贮存数量构成重大危险源的其他危险化学品，贮存单位应当将其贮存数量、贮存地点以及管理人员的情况，报所在地县级人民政府应急管理部门（在港区内贮存的，报港口行政管理部门）和公安机关备案。

第四十六条 危险化学品专用贮存场所应当符合国家标准、行业标准的要求，并设置明显的标志。贮存剧毒化学品、易制爆危险化学品的专用贮存场所，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设置相应的技术防范设施。

贮存危险化学品的单位应当对其危险化学品专用贮存场所的储罐等安全设施、设备定期进行检测、检验。

第四十七条 生产、贮存危险化学品的单位整体或部分转产、停产、停业或者解散的，应当采取有效措施，及时、妥善处置其危险化学品生产装置、贮存设施以及库存的危险化学品，不得丢弃危险化学品；处置方案应当报所在地县级人民政府住房城乡建设部门、应急管理部门、工业和信息化部门、生态环境主管部门和公安机关备案。应急管理部门应当会同生态环境主管部门和公安机关对处置情况进行监督检查，发现未依照规定处置的，应当责令其立即处置。

第五章 使用安全

第四十八条 使用危险化学品的单位，其使用条件（包括工艺）应当符合法律、行政法规的规定和国家标准、行业标准的要求，并根据所使用的危险化学品的种类、危险特性以及使用量和使用方式，建立、健全使用危险化学品的安全管理规章制度和安全操作规程，保证危险化学品的安全使用。

第四十九条 使用规定种类的危险化学品从事生产并且使用量达到规定数量的化工企业（属于危险化学品生产企业的除外，下同），应当依照本法的规定取得危险化学品安全生产许可证（使用）。

前款规定的危险化学品种类及其使用量的数量标准，由国务院应急管理部门会同国务院公安部门、农业农村主管部门确定并公布。

第五十条 申请危险化学品安全生产许可证（使用）的化工企业，除应当符合本法第四十八条的规定外，还应当具备下列条件：

（一）有与所使用的危险化学品相适应的专业技术人员；

（二）有安全管理机构和专职安全管理人员，且专职安全管理人员具有中级及以上化工相关类专业技术职称或者化工安全类注册安全工程师资格；

（三）有符合国家规定的危险化学品事故应急预案和专职或者兼职应急救援人员、必要的应急救援器材、设备；

（四）依法进行了安全评价。

第五十一条 申请危险化学品安全生产许可证（使用）的化工企业，应当向所在地设区的市级人民政府应急管理部门提出申请，并提交其符合本法第五十条规定条件的证明材料。设区的市级人民政府应急管理部门应当依法进行审查，自收到证明材料之日起20个工作日内作出批准或者不予批准的决定。予以批准的，颁发危险化学品安全生产许可证（使用）；不予批准的，书面通知申请人并说明理由。

应急管理部门应当将其颁发危险化学品安全生产许可证（使用）的情况及时向社会公示，涉及国家秘密、商业秘密和个人隐私的信息除外。

第五十二条 使用危险化学品的单位应当将其作业场所使用危险化学品的安全技术说明书和安全标签提供给从业人员，将安全标签贴在危险化学品容器上，并告知从业人员正确使用的方法和在紧急情况下应当采取的措施。

第五十三条 学校、科研院所、医疗机构等使用危险化学品的单位应当开展危险有害因素辨识，采取安全风险防范措施，加强从业人员安全培训教育，提升安全意识，建立健全危险化学品安全管理规章制度。

第五十四条 任何单位和个人购买危险化学品时，有权向危险化学品生产、经营单位索取有关危险化学品的安全技术说明书，了解其危险特性、防护措施和使用方法。

危险化学品生产、经营单位在销售危险化学品时，应当向购买单位或者个人提供符合法律、行政法规、国家标准和行业标准的化学品安全技术说明书。

第五十五条 在使用危险化学品前，使用单位应当进行相应的安全风险评估，确认本单位存在的安全风险，实施安全风险分级管控，采取相应的安全管控措施。

第五十六条 任何单位和个人不得随意丢弃危险化学品。个人携带危险化学品乘坐公共交通工具的，应当遵守相关交通运输管理规定。

第五十七条 公众发现、捡拾的无主危险化学品，由公安机关接收。公安机关接收或者有关部门依法没收的危险化学品，需要进行无害化处理的，交由有关危险化学品生产企业或者废弃危险化学品集中处置单位进行处理。处理所需费用由国家财政负担。

第五十八条 单位和个人应当采取必要的管控措施，严防危险化学品流失。危险化学品被盗、被抢或者其他方式流失的，案发单位和个人应当立即向公安机关报告，并采取必要的控制措施，同时依照规定向有关部门报告。公安机关接到报告后，应当及时开展调查处理。有关部门应当积极配合公安机关开展相关工作。

第五十九条 本法第三十一条、第三十二条、第四十条、第四十一条、第四十三条第一款、第四十四条、第四十五条、第四十六条关于生产、贮存危险化学品的单位的规定，适用于使用危险化学品的单位；第二十九条、第三十条、第三十三条、第三十五条、第三十九条、第四十二条关于生产、贮存危险化学品的企业的规定，适用于使用危险化学品从事生产的企业。

第六章 经营安全

第六十条 国家对危险化学品经营（包括仓储经营，下同）实行许可制度。未经许可，任何单位和个人不得经营危险化学品。

依法设立的危险化学品生产企业在其厂区范围内销售本企业生产的危险化学品，不需要取得危险化学品经营许可。

依照《中华人民共和国港口法》的规定取得港口经营许可证的港口经营人，在港区内从事危险化学品仓储经营，不需要取得危险化学品经营许可。

第六十一条 从事危险化学品经营的企业应当具备下列条件：

（一）有符合国家标准、行业标准的经营场所，贮存危险化学品的，还应当有符合国家标准、行业标准的贮存设施；

（二）企业主要负责人和专职安全管理人员具备与本企业危险化学品经营活动相适应的安全生产知识和管理能力，经应急管理部门考核合格；特种作业人员经专门的安全作业培训，取得特种作业操作证书；其他从业人员经过专业技术培训并经考核合格；

（三）有健全的安全管理规章制度；

（四）有专职安全管理人员；

（五）有符合国家规定的危险化学品事故应急预案和必要的应急救援器材、设备；

（六）法律、法规规定的其他条件。

第六十二条 从事剧毒化学品、易制爆危险化学品经营的企业，应当向所在地设区的市级人民政府应急管理部门提出申请，从事其他危险化学品经营的企业，应当向所在地县级人民政府应急管理部门提出申请（有贮存设施的，应当向所在地设区的市级人民政府应急管理部门提出申请）。申请人应当提交其符合本法第六十一条规定条件的证明材料。设区的市级人民政府应急管理部门或者县级人民政府应急管理部门应当依法进行审查，并对申请人的从业人员安全培训教育情况、经营场所、贮存设施、安全管理情况等安全条件进行现场核查。自收到证明材料之日起20个工作日内作出批准或者不予批准的决定。予以批准的，颁发危险化学品安全生产许可证（经营）；不予批准的，书面通知申请人并说明理由。

设区的市级人民政府应急管理部门和县级人民政府应急管理部门应当将其颁发危险化学品经营安全生产许可证（经营）的情况及时向社会公示，涉及国家秘密、商业秘密和个人隐私的信息除外。

第六十三条 危险化学品经营企业贮存危险化学品的，应当遵守本法第四章关于贮存危险化学品的规定。危险化学品商店可以在其贮存场所、经营场所内存放民用小包装的危险化学品，但总量不得超过国家规定的限量。

第六十四条 任何单位和个人不得向未经依法许可从事危险化学品生产、经营活动的企业采购危险化学品，不得经营没有化学品安全技术说明书或者化学品安全标签的危险化学品，不得擅自更改化学品安全技术说明书或者安全标签。

第六十五条 依法取得危险化学品安全生产许可证的企业，凭相应的许可证件购买剧毒化学品、易制爆危险化学品。民用爆炸物品、烟花爆竹、武器装备科研生产企业凭相应许可证购买易制爆危险化学品。前款规定以外的单位购买剧毒化学品的，应当向所在地县级人民政府公安机关申请取得剧毒化学品购买许可证；购买易制爆危险化学品的，应当持本单位出具的合法用途说明。

个人不得购买剧毒化学品（属于剧毒化学品的农药除外）和易制爆危险化学品（含有易制爆危险化学品的食品添加剂、药品、兽药、消毒剂等生活用品除外）。

第六十六条 申请取得剧毒化学品购买许可证，申请人应当向所在地县级人民政府公安机关提交下列材料：

（一）营业执照或者法人证书（登记证书）的复印件；

（二）拟购买的剧毒化学品品种、数量的说明；

（三）购买剧毒化学品用途的说明；

（四）经办人的身份证明。

县级人民政府公安机关应当自收到前款规定的材料之日起3日内，作出批准或者不予批准的决定。予以批准的，颁发剧毒化学品购买许可证；不予批准的，书面通知申请人并说明理由。

剧毒化学品购买许可证管理办法由国务院公安部门制定。

第六十七条 危险化学品生产企业、经营企业销售剧毒化学品、易制爆危险化学品，应当查验本法第六十五条第一款、第二款规定的相关许可证件或者证明文件，不得向不具有相关许可证件或者证明文件的单位销售剧毒化学品、易制爆危险化学品。对持剧毒化学品购买许可证购买剧毒化学品的，应当按照许可证载明的品种、数量销售。

禁止向个人销售剧毒化学品（属于剧毒化学品的农药除外）和易制爆危险化学品（含有易制爆危险化学品的食品添加剂、药品、兽药、消毒剂等生活用品除外）。

第六十八条 危险化学品生产企业、经营企业销售剧毒化学品、易制爆危险化学品，应当如实记录购买单位的名称、地址、经办人的姓名、身份证号码以及所购买的剧毒化学品、易制爆危险化学品的品种、数量、用途。销售记录以及经办人的身份证明复印件、相关许可证件复印件或者证明文件的保存期限不得少于3年。

剧毒化学品、易制爆危险化学品的销售企业、购买单位应当在销售、购买后10日内，将所销售、购买的剧毒化学品、易制爆危险化学品的品种、数量以及流向信息报所在地县级人民政府公安机关备案，并录入信息系统。

第六十九条 使用剧毒化学品、易制爆危险化学品的单位不得出借、转让其购买的剧毒化学品、易制爆危险化学品；因转产、停产、搬迁、关闭等确需转让的，应当向具有本法第六十五条第一款、第二款规定的相关许可证件或者证明文件的单位转让，并在转让后将有关情况及时向所在地县级人民政府公安机关报告。

第七十条 禁止通过互联网销售剧毒化学品、易制爆危险化学品。

通过互联网销售其他危险化学品的，除符合有关包装、贮存、运输要求外，还应当符合互联网信息发布相关规定。具体办法由国务院公安部门、工业和信息化部门、应急管理部门、市场监管部门、邮政管理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制定。

第七章 运输安全

第七十一条 通过道路、水路、铁路和民用航空运输属于危险货物的危险化学品，应当遵守有关危险货物运输、储存、装卸的法律、行政法规和国家标准或者行业标准的规定；不属于危险货物的危险化学品，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按照交通运输规则制定豁免量及豁免条件进行运输。

第七十二条 从事危险化学品道路运输、水路运输、铁路运输、航空运输的，应当分别依照有关道路运输、水路运输、铁路运输、航空运输的法律、行政法规的规定，分别取得危险货物道路运输许可、危险货物水路运输许可或者备案、铁路运输许可、航空运输许可，并向市场监管部门办理登记手续。

危险化学品道路运输企业、水路运输企业、铁路运输、航空运输企业应当配备专职安全管理人员。

第七十三条 危险化学品道路运输企业、水路运输企业的驾驶人员、船员、装卸管理人员、押运人员、申报人员、集装箱装箱现场检查员应当经交通运输主管部门考核合格，取得从业资格。具体办法由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制定。

危险化学品的装卸作业应当遵守安全作业标准、规程和制度，并在装卸管理人员的现场指挥或者监控下进行。水路运输危险化学品的集装箱装箱作业应当在集装箱装箱现场检查员的指挥或者监控下进行，并符合积载、隔离的规范和要求；装箱作业完毕后，集装箱装箱现场检查员应当签署装箱证明书。

第七十四条 运输危险化学品，应当根据危险化学品的危险特性采取相应的安全防护措施，并配备必要的防护用品和应急救援器材。

用于运输危险化学品的槽罐、罐式集装箱以及其他容器应当封口严密，能够防止危险化学品在运输过程中因温度、湿度或者压力的变化发生渗漏、洒（撒）漏；槽罐以及其他容器的溢流和泄压装置应当设置准确、起闭灵活。

运输危险化学品的驾驶人员、船员、装卸管理人员、押运人员、申报人员、集装箱装箱现场检查员，应当了解所运输的危险化学品的危险特性及其包装物、容器的使用要求，掌握出现危险情况时的应急处置措施。

第七十五条 通过道路运输危险化学品的，托运人应当委托依法取得相应危险货物道路运输许可的企业承运。

危险化学品道路运输承运人应当在车辆运行期间通过定位系统对车辆和驾驶人进行监控管理，实现安全监测、监控和预警。

第七十六条 通过道路运输危险化学品的，充装单位应当按照运输车辆的核定载质量装载危险化学品，不得超载；承运人和充装单位应当对运输车辆、罐体是否在安全技术检验有效期、是否安装、悬挂或者喷涂警示标志进行查核。

危险化学品运输车辆及其罐体应当符合国家标准要求的安全技术条件，并按照国家有关规定定期进行清洗和安全技术检验。

危险化学品运输车辆及其罐体应当安装、悬挂或者喷涂符合国家标准要求的警示标志。

第七十七条 通过道路运输危险化学品的，承运人应当配备押运人员，并保证所运输的危险化学品处于押运人员的监控之下。押运人员应当随车携带所运输危险化学品的安全技术说明书和安全标签。

通过道路运输危险化学品的，危险化学品包装物的材质、型式、强度以及包装方法应当符合国家相关包装规范的要求。运输企业应当针对所运输的危险化学品的危险特性，制定相应的危险化学品事故应急救援预案，并为运输车辆配备必要的应急救援器材和设备。

运输危险化学品途中因住宿或者发生影响正常运输的情况，需要较长时间停车的，驾驶人员、押运人员应当采取相应的安全防范措施。运输危险化学品的驾驶员日间连续驾驶时间不得超过3小时，夜间连续驾驶时间不得超过2小时。运输剧毒化学品或者易制爆危险化学品的，还应当向当地公安机关报告。

第七十八条 未经公安机关批准，运输危险化学品的车辆不得进入危险化学品运输车辆限制通行的区域。危险化学品运输车辆限制通行的区域由县级人民政府公安机关根据危险化学品风险分类划定，并设置明显的标志。

公安机关应当严格特大型公路桥梁、特长公路隧道、饮用水源地危险货物运输车辆通行管控。

第七十九条 通过道路运输剧毒化学品的，托运人应当向运输始发地或者目的地县级人民政府公安机关申请剧毒化学品道路运输通行证。

申请剧毒化学品道路运输通行证，托运人应当向县级人民政府公安机关提交下列材料：

（一）拟运输的剧毒化学品品种、数量的说明；

（二）运输始发地、目的地、运输时间和运输路线的说明；

（三）承运人取得危险货物道路运输许可、运输车辆取得营运证以及驾驶人员、押运人员取得上岗资格的证明文件；

（四）本法第六十五条第一款、第二款规定的购买剧毒化学品的相关许可证件，或者海关出具的进出口证明文件。

县级人民政府公安机关应当自收到前款规定的材料之日起7日内，作出批准或者不予批准的决定。予以批准的，颁发剧毒化学品道路运输通行证；不予批准的，书面通知申请人并说明理由。

剧毒化学品道路运输通行证管理办法由国务院公安部门制定。

第八十条 剧毒化学品、易制爆危险化学品在道路运输途中丢失、被盗、被抢或者出现流散、泄漏等情况的，驾驶人员、押运人员应当立即采取相应的警示措施和安全措施，并向当地公安机关报告。公安机关接到报告后，应当根据实际情况立即向交通运输管理部门、应急管理部门、生态环境主管部门、卫生健康部门通报。有关部门应当采取必要的应急处置措施。

第八十一条 通过水路运输危险化学品的，应当遵守法律、行政法规以及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关于危险货物水路运输安全的规定。

第八十二条 海事管理机构应当根据危险化学品的种类和危险特性，确定船舶运输危险化学品的安全运输条件。

拟交付船舶运输的危险化学品的安全运输条件不明确的，货物所有人或者代理人应当委托经国家海事管理机构认定的相关技术机构进行评估，明确相关安全运输条件并经海事管理机构确认后，方可交付船舶运输。

第八十三条 禁止通过内河封闭水域运输剧毒化学品以及国家规定禁止通过内河运输的其他危险化学品。

前款规定以外的内河水域，禁止运输国家规定禁止通过内河运输的剧毒化学品以及其他危险化学品。

禁止通过内河运输的剧毒化学品以及其他危险化学品的范围，由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会同国务院生态环境主管部门、工业和信息化部门、应急管理部门，根据危险化学品的危险特性、危险化学品对人体和水环境的危害程度以及消除危害后果的难易程度等因素规定并公布。

第八十四条 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应当根据危险化学品的危险特性，对通过内河运输本法第八十三条规定以外的危险化学品（以下简称通过内河运输危险化学品）实行分类管理，对各类危险化学品的运输方式、包装规范和安全防护措施等分别作出规定并监督实施。

第八十五条 通过内河运输危险化学品，应当由依法取得危险货物水路运输许可的水路运输企业承运，其他单位和个人不得承运。托运人应当委托依法取得危险货物水路运输许可的水路运输企业承运，不得委托其他单位和个人承运。

第八十六条 通过内河运输危险化学品，应当使用依法取得危险货物适装证书的运输船舶。水路运输企业应当针对所运输的危险化学品的危险特性，制定运输船舶危险化学品事故应急救援预案，并为运输船舶配备充足、有效的应急救援器材和设备。

通过内河运输危险化学品的船舶，其所有人或者经营人应当取得船舶污染损害责任保险证书或者财务担保证明。船舶污染损害责任保险证书或者财务担保证明的副本应当随船携带。

第八十七条 通过内河运输危险化学品，危险化学品包装物的材质、型式、强度以及包装方法应当符合水路运输危险化学品包装规范的要求。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对单船运输的危险化学品数量有限制性规定的，承运人应当按照规定安排运输数量。

第八十八条 用于危险化学品运输作业的内河码头、泊位应当符合国家有关安全规范，与饮用水取水口保持国家规定的距离。有关管理单位应当制定码头、泊位危险化学品事故应急预案，并为码头、泊位配备充足、有效的应急救援器材和设备。

用于危险化学品运输作业的内河码头、泊位，经交通运输主管部门按照国家有关规定验收合格后方可投入使用。

第八十九条 船舶载运危险化学品进出内河港口，应当将危险化学品的名称、危险特性、包装以及进出港时间等事项，事先报告海事管理机构。海事管理机构接到报告后，应当在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规定的时间内作出是否同意的决定，通知报告人，同时通报港口行政管理部门。定船舶、定航线、定货种的船舶可以定期报告。

在内河港口内进行危险化学品的装卸、过驳作业，应当将危险化学品的名称、危险特性、包装和作业的时间、地点等事项报告港口行政管理部门。港口行政管理部门接到报告后，应当在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规定的时间内作出是否同意的决定，通知报告人，同时通报海事管理机构。

载运危险化学品的船舶在内河航行，通过过船建筑物的，应当提前向交通运输主管部门申报，并接受交通运输主管部门的管理。

第九十条 载运危险化学品的船舶航行、装卸或者停泊，应当悬挂专用的警示标志，按照规定显示专用信号。

载运危险化学品的船舶在内河航行，按照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的规定需要引航的，应当申请引航。

第九十一条 载运危险化学品的船舶在内河航行，应当遵守法律、行政法规和国家其他有关饮用水水源和自然保护地保护的规定。内河航道发展规划应当与依法经批准的饮用水水源保护区划定方案和自然保护地总体规划相协调。

第九十二条 托运危险化学品的，托运人应当向承运人说明所托运的危险化学品的种类、数量、危险特性以及发生危险情况的应急处置措施，提供化学品安全技术说明书，并按照国家有关规定对所托运的危险化学品妥善包装，在危险化学品包装（包括外包装件）上粘贴或者拴挂与包装内危险化学品相符的化学品安全标签。

运输危险化学品需要添加抑制剂或者稳定剂的，托运人应当添加，并将有关情况告知承运人。

第九十三条 托运人和承运人不得在托运或者承运的普通货物中夹带危险化学品，不得将危险化学品匿报或者谎报为普通货物托运或者承运。

交寄、收寄危险化学品的，应当遵守国务院邮政管理部门的规定。

对涉嫌违反本条第一款、第二款规定的，交通运输主管部门、邮政管理部门可以依法开拆查验。

第九十四条 通过铁路、航空运输（包括运输过程中临时存放）危险化学品的安全管理，依照有关铁路、航空运输的法律、行政法规、规章的规定执行。

第八章 废弃处置安全

第九十五条 产生废弃危险化学品的单位，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制定废弃危险化学品管理计划，建立废弃危险化学品管理台账，如实记录有关信息，并通过国家危险废物信息管理系统向所在地生态环境主管部门申报废弃危险化学品的种类、产生量、流向、贮存、处置等有关资料。

生态环境主管部门应当通过有关信息系统将企业备案信息推送给同级应急管理部门。

在常温常压下易爆、易燃及排出有毒气体的废弃危险化学品贮存、处置前，产生废弃危险化学品的单位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进行稳定化预处理。

第九十六条 产生废弃危险化学品的单位，应当具备符合国家标准的贮存设施，对废弃危险化学品的产生环节、种类、数量、性质等进行分析，采取风险防控措施，制定安全处置方案。

第九十七条 收集、贮存、利用、处置废弃危险化学品的建设项目安全设施，应当按照本法规定与主体工程同时设计、同时施工、同时投入生产和使用，“三同时”管理的具体办法由生态环境主管部门制定。

第九十八条 从事收集、贮存、利用、处置废弃危险化学品及其包装物、容器经营活动的单位应当具备国家有关法律、行政法规和国家标准或者行业标准规定的安全生产条件，并按照国家有关规定申请取得生态环境主管部门颁发的许可证。许可证的具体管理办法由国务院制定。

禁止无许可证或者未按照许可证规定从事危险废物收集、贮存、利用、处置的经营活动。

禁止将危险废物提供或者委托给无许可证的单位或者其他生产经营者从事收集、贮存、利用、处置活动。

取得危险废物经营许可证的单位，不需要取得危险化学品安全生产相关许可。

第九十九条 从事收集、贮存、处置、利用废弃危险化学品经营活动的单位应当建立健全安全生产规章制度，设置安全生产管理机构或者配备专职安全管理人员，采取可靠的安全措施，接受生态环境主管部门实施的监督管理。

收集、贮存、利用、处置危险物品的单位，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投保环境责任险。

第一百条 废弃危险化学品运输应当遵守国家有关危险货物运输管理的规定，采取有效风险防控措施，确保废弃危险化学品运输安全。

第九章 事故应急救援

第一百零一条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急管理部门应当会同工业和信息化、生态环境、公安、卫生健康、交通运输、市场监管等部门，根据本地区实际情况，制定危险化学品事故应急预案，报本级人民政府批准，并依法向社会公布。

负有危险化学品安全监督管理职责的部门应当制定本部门危险化学品事故应急预案。

第一百零二条 危险化学品单位应当做好应急准备工作，健全应急管理制度，制定本单位危险化学品事故应急预案，依法建立专职或者兼职应急救援队伍，配备应急救援人员和必要的应急救援器材、装备和物资，并定期组织应急救援演练。生产经营规模较小的，可以不建立专门的应急救援队伍，但应当配备专职或者兼职的应急救援人员，或者与邻近的应急救援队伍签订应急救援协议。

危险化学品单位应当将其危险化学品事故应急预案报送所在地设区的市级人民政府应急管理部门和其他负有安全生产监督管理职责的部门备案，并依法向社会公布。

第一百零三条 县级以上地方各级人民政府根据生产安全事故应急工作的实际需要，加强在化工园区危险化学品专业应急救援力量建设，可以依托有条件的生产经营单位、社会组织共同建立危险化学品专业应急救援队伍，配备必要的应急救援装备和物资，并定期组织训练。

化工园区内的危险化学品单位，可以联合建立应急救援队伍。

第一百零四条 发生危险化学品事故，事故单位主要负责人应当立即按照本单位危险化学品应急预案组织救援，并向当地应急管理部门和生态环境、公安、卫生健康主管部门报告，及时通知可能受影响的单位和人员；道路运输、水路运输过程中发生危险化学品事故的，驾驶人员、船员或者押运人员还应当向事故发生地交通运输主管部门报告。

第一百零五条 危险化学品单位发生危险化学品事故或者遇到险情时，作业现场带班人员、班组长和调度人员有权立即下达停产撤人命令，指挥有关遇险人员撤离。

第一百零六条 发生危险化学品事故，有关地方人民政府应当立即组织应急管理、生态环境、公安、卫生健康、交通运输等有关部门，按照本地区危险化学品事故应急预案组织实施救援，不得拖延、推诿。

有关地方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应当按照下列规定，采取停产撤人等必要的应急处置措施，减少事故损失，防止事故蔓延、扩大：

（一）立即组织营救和救治受害人员，疏散、撤离或者采取其他措施保护受到威胁的其他人员；

（二）迅速控制危害源，测定危险化学品的性质、事故的危害区域及危害程度；

（三）针对事故对人体、动植物、土壤、水源、大气造成的现实危害和可能产生的危害，迅速采取封闭、隔离、洗消等措施；

（四）对危险化学品环境污染和生态破坏状况进行监测、评估，并采取相应的环境污染治理和生态修复措施。

第一百零七条 有关危险化学品单位应当为危险化学品事故应急救援提供技术指导和必要的协助。

第一百零八条 危险化学品事故造成环境污染的，由设区的市级以上人民政府统一发布有关信息。

第十章 法律责任

第一百零九条 生产、贮存、经营、使用、运输国家禁止生产、贮存、经营、使用、运输的危险化学品的，由负有危险化学品安全监督管理职责的部门依照职责责令停止生产、经营、使用、运输活动，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和违法生产、贮存、经营、使用、运输的危险化学品，并可以没收用于违法生产、贮存、经营、使用、运输的工具、设备、原料等物品；同时对于违法生产、贮存、经营、使用、运输的危险化学品货值不足10万元的，并处3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货值金额10万元以上的，并处货值金额5倍以上10倍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由原发证机关吊销有关许可证，并由负有危险化学品安监督管理职责的部门依照职责移送公安机关对其主要负责人、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5日以上15日以下拘留；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有前款规定行为的，负有危险化学品安全监督管理职责的部门还应当责令其对所生产、贮存、经营、使用的危险化学品进行无害化处理。

违反国家关于危险化学品使用的限制性规定使用危险化学品的，依照本条第一款的规定处理。

明知从事前款规定的违法行为，仍为其提供场所或者其他条件的，由负有危险化学品安全监督管理职责的部门依照职责责令停止违法行为，没收违法所得，并处5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对他人造成损害的，应当与违法生产、贮存、经营、使用、运输者承担连带责任。

第一百一十条危险化学品建设项目的设计单位、施工单位、建设单位有下列情形之一的，由住房城乡建设部门责令限期改正，处10万元以上3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责令停业整顿，降低资质等级，直至吊销资质证书；造成严重后果，构成犯罪的，对直接责任人员依法追究刑事责任：

（一）设计单位违反安全生产有关法律、行政法规规定和国家标准或者行业标准要求进行设计，或者在设计中未提出保障施工作业人员安全和预防生产安全事故的措施建议以及措施建议不符合国家标准、行业标准的；

（二）施工单位未按照工程设计要求和国家有关建设工程安全标准施工的；

（三）实行工程监理的建设项目，建设单位未将施工安全一并委托监理的。

第一百一十一条 未经安全条件审查，新建、改建、扩建生产、贮存、装卸危险化学品的建设项目的，由负有危险化学品安全监管职责的部门依照职责责令停止建设，限期改正，并处50万元以上100万元以下的罚款；逾期不改正的，处100万元以上200万元以下的罚款，责令建设单位拆除已经建成的全部或者部分建设项目；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未经安全审查，新建、改建、扩建贮存、装卸危险化学品的港口、铁路建设项目的，分别由港口行政管理部门、铁路监管部门依照前款规定予以处罚。

第一百一十二条 有下列情形之一的，由负有危险化学品安全生产监督管理职责的部门依照职责责令停止生产、经营、使用活动，没收违法所得和违法生产、经营、使用的危险化学品，并可以没收用于违法生产、经营、使用的工具、设备、原料等物品；违法生产、经营、使用的危险化学品货值不足10万元的，并处货值金额2倍以上5倍以下的罚款；货值金额10万元以上的，并处货值金额5倍以上10倍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由负有危险化学品安全生产监督管理职责的部门移送公安机关对其主要负责人、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5日以上15日以下拘留；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一）未依法取得危险化学品安全生产许可证从事危险化学品生产经营活动的；

（二）化工企业未取得危险化学品安全生产许可证（使用），使用危险化学品从事生产的；

对未依法取得工业产品生产许可证从事危险化学品及其包装物、容器生产的，由市场监管部门依照前款规定予以处罚。

明知从事前款规定的违法行为，仍为其提供生产经营使用场所或者其他条件的，由县级以上应急管理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没收违法所得，并处5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对他人造成损害的，应当与违法生产经营者承担连带责任。

第一百一十三条 有下列情形之一的，由负有危险化学品安全生产监督管理职责的部门依照职责责令改正，处2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对主要负责人、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以1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拒不改正的，处10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责令停产停业整顿，对主要负责人、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以5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

（一）危险化学品生产、贮存单位未建立生产作业环节过程安全管理制度，明确责任人、岗位职责和操作规程的；

（二）危险化学品生产、贮存、使用、经营企业未对从业人员进行安全生产教育培训，或者有关从业人员不具备本法规定的任职条件或者资格的；

（三）生产、贮存危险化学品的单位未对其铺设的危险化学品管道设置明显的标志，或者未对危险化学品管道定期检查、检测的；

（四）进行可能危及危险化学品管道安全的施工作业，施工单位未按照规定书面通知管道所属单位，或者未与管道所属单位共同制定应急预案、采取相应的安全防护措施，或者管道所属单位未指派专门人员到现场进行管道安全保护指导的；

（五）危险化学品生产企业未提供化学品安全技术说明书，或者未在包装（包括外包装件）上粘贴、拴挂化学品安全标签的；

（六）危险化学品生产企业提供的化学品安全技术说明书与其生产的危险化学品不相符，或者在包装（包括外包装件）粘贴、拴挂的化学品安全标签与包装内危险化学品不相符，或者化学品安全技术说明书、化学品安全标签所载明的内容不符合国家标准要求的；

（七）危险化学品生产企业发现其生产的危险化学品有新的危险特性不立即公告，或者不及时修订其化学品安全技术说明书和化学品安全标签的；

（八）危险化学品经营企业经营没有化学品安全技术说明书和化学品安全标签的危险化学品，或者擅自更改化学品安全技术说明书或安全标签，或者安全技术说明和化学品安全标签与实际情况不符的；

（九）危险化学品包装物、容器的材质以及包装的型式、规格、方法和单件质量（重量）与所包装的危险化学品的性质和用途不相适应的；

（十）生产、贮存、使用危险化学品的单位未在作业场所和安全设施、设备上设置明显的安全警示标志，或者未在作业场所设置通信、报警装置的；

（十一）危险化学品生产、贮存、使用单位未建立安全风险研判与承诺公告制度，或者未实施安全风险分级管控，采取相应管控措施的；

（十二）研制开发单位进行危险化学品新工艺开发，未开展安全风险评估，或者未向受让人提供安全论证报告及相关资料的；

（十三）使用危险化学品的单位未将其作业场所使用的危险化学品安全技术说明书提供给从业人员，未告知从业人员正确使用或者紧急情况应当采取的措施的；

（十四）危险化学品专用仓库未设专人负责管理，或者对贮存的剧毒化学品以及贮存数量构成重大危险源的其他危险化学品未实行双人收发、双人保管制度的；

（十五）贮存危险化学品的单位未建立危险化学品出入库核查、登记制度的；

（十六）危险化学品专用仓库未设置明显标志的；

（十七）危险化学品生产企业、进口企业不办理危险化学品登记，或者发现其生产、进口的危险化学品有新的危险特性不办理危险化学品登记内容变更手续的，或者构成重大危险源的经营带贮存、使用取证企业不办理危险化学品登记的；

（十八）危险化学品生产企业、进口企业对其生产、进口的尚未明确危险特性的化学品不进行鉴定，或者经鉴定属于危险化学品，不依照本法进行管理，或者不及时书面报告国务院应急管理部门的；

（十九）生产、贮存、使用危险化学品且构成重大危险源的单位未将本单位使用的危险化学品的性质、危害、影响范围和应急措施告知周边可能受到影响的单位（居民）的。

（二十）危险化学品的生产、贮存、使用企业未根据国家标准或者行业标准的规定装备自动控制系统和安全仪表系统，建立安全生产信息监控系统并实行网上安全监测、监控和预警的。

（二十一）实施备案管理的危险化学品生产企业未按照规定进行备案的。

从事危险化学品仓储经营的港口经营人有前款规定情形的，由港口行政管理部门依照前款规定予以处罚。贮存剧毒化学品、易制爆危险化学品的专用仓库未按照国家有关规定设置相应的技术防范设施的，由公安机关依照前款规定予以处罚。

在对进出口危险化学品实施检验过程中，发现本条第一款第五项、第六项、第九项违法行为的，由海关主管部门依照第一款规定予以处罚。

生产、贮存剧毒化学品、易制爆危险化学品的单位未设置治安保卫机构、配备专职治安保卫人员的，依照企业事业单位内部治安保卫法律、行政法规的规定处罚。

第一百一十四条 危险化学品包装物、容器生产企业销售未经检验或者经检验不合格的危险化学品包装物、容器，危险化学品生产企业使用的包装物、容器不符合法律、行政法规、规章的规定以及国家标准、行业标准的要求的，由市场监管部门责令改正，处10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拒逾期不改正的，责令停产停业整顿，对主要负责人、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以1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将未经检验合格的运输危险化学品的船舶及其配载的容器投入使用的，由海事管理机构依照前款规定予以处罚。

在对进出口危险化学品实施检验过程中，发现本条第一款违法行为的，由海关主管部门依照第一款规定予以处罚。

第一百一十五条 生产、贮存、使用危险化学品的单位有下列情形之一的，由负有危险化学品安全生产监督管理职责的管理部门依照职责责令改正，处10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对主要负责人、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以1万元以上5万元以下罚款；拒不改正的，责令停产停业整顿直至由原发证机关吊销其相关许可证件，并由市场监管部门责令其办理经营范围变更登记或者吊销其营业执照；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一）对重复使用的危险化学品包装物、容器，在重复使用前不进行检查的；

（二）未根据其生产、贮存的危险化学品的种类和危险特性，在作业场所设置相关安全设施、设备，或者未按照国家标准、行业标准或者国家有关规定对安全设施、设备进行经常性维护、保养的；

（三）未依照本法规定对其安全生产条件定期进行安全评价的；

（四）未将危险化学品贮存在专用仓库内，或者未将剧毒化学品以及贮存数量构成重大危险源的其他危险化学品在专用仓库内单独存放的；

（五）危险化学品的贮存方式、方法或者贮存数量不符合国家标准或者国家有关规定的；

（六）危险化学品专用仓库不符合国家标准、行业标准的要求的；

（七）未对危险化学品专用仓库的安全设施、设备定期进行检测、检验的；

（八）未对危险化学品重大危险源进行定期检测、评估，或者未登记建档，或者未制定应急预案，或者未建立应急救援组织，或者未建立监控与事故预警系统的；

（九）未将重大危险源及有关安全措施、应急措施报有关地方人民政府负有危险化学品安全监督管理职责的部门备案的。

从事危险化学品仓储经营的港口经营人有前款规定情形的，由港口行政管理部门依照前款规定予以处罚。

第一百一十六条 有下列情形之一的，由公安机关责令改正，可以处10万元以下的罚款，对主要负责人、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以1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拒不改正的，处10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对主要负责人、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以5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

（一）生产、贮存、使用剧毒化学品、易制爆危险化学品的单位不如实记录生产、贮存、使用的剧毒化学品、易制爆危险化学品的数量、流向的；

（二）生产、贮存、使用剧毒化学品、易制爆危险化学品的单位发现剧毒化学品、易制爆危险化学品丢失或者被盗，不立即向公安机关报告的；

（三）贮存剧毒化学品的单位未将剧毒化学品的贮存数量、贮存地点以及管理人员的情况报所在地县级人民政府公安机关备案的；

（四）危险化学品生产企业、经营企业不如实记录剧毒化学品、易制爆危险化学品购买单位的名称、地址、经办人的姓名、身份证号码以及所购买的剧毒化学品、易制爆危险化学品的品种、数量、用途，或者保存销售记录和相关材料的时间少于3年的；

（五）剧毒化学品、易制爆危险化学品的销售企业、购买单位未在规定的时限内将所销售、购买的剧毒化学品、易制爆危险化学品的品种、数量以及流向信息报所在地县级人民政府公安机关备案的；

（六）使用剧毒化学品、易制爆危险化学品的单位依照本法规定转让其购买的剧毒化学品、易制爆危险化学品，未将有关情况向所在地县级人民政府公安机关报告的。

生产、贮存危险化学品的企业或者使用规定种类的危险化学品从事生产并且使用量达到规定数量的化工企业未按照本法规定将安全评价报告以及整改方案的落实情况报应急管理部门或者港口行政管理部门备案，或者贮存危险化学品的单位未将其剧毒化学品以及贮存数量构成重大危险源的其他危险化学品的贮存数量、贮存地点以及管理人员的情况报应急管理部门或者港口行政管理部门备案的，分别由应急管理部门或者港口行政管理部门依照前款规定予以处罚。

第一百一十七条 生产、贮存、使用危险化学品的单位转产、停产、停业或者解散，未采取有效措施及时、妥善处置其危险化学品生产装置、贮存设施以及库存的危险化学品，或者丢弃危险化学品的，由负有危险化学品安全生产监督管理职责的部门依照职责责令改正，处1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对主要负责人、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以5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生产、贮存、使用危险化学品的单位转产、停产、停业或者解散，未依照本法规定将其危险化学品生产装置、贮存设施以及库存危险化学品的处置方案报有关部门备案的，分别由有关部门责令改正，可以处10万元以下的罚款；拒不改正的，处10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

第一百一十八条 危险化学品经营企业向未经许可或者备案违法从事危险化学品生产、经营活动的企业采购危险化学品的，由市场监管部门责令改正，处2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对主要负责人、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以5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拒不改正的，责令停业整顿直至由原发证机关吊销其危险化学品安全生产许可证，并由市场监管部门责令其办理经营范围变更登记或者吊销其营业执照。

第一百一十九条 危险化学品生产企业、经营企业有下列情形之一的，由应急管理部门责令改正，没收违法所得，并处1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对主要负责人、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以5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拒不改正的，责令停产停业整顿直至吊销其危险化学品安全生产许可证，并由市场监管部门责令其办理经营范围变更登记或者吊销其营业执照，由应急管理部门移送公安机关给予其主要负责人、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5日以上15日以下拘留：

（一）向不具有本法第六十五条第一款、第二款规定的相关许可证件或者证明文件的单位销售剧毒化学品、易制爆危险化学品的；

（二）不按照剧毒化学品购买许可证载明的品种、数量销售剧毒化学品的；

（三）向个人销售剧毒化学品（属于剧毒化学品的农药除外）、易制爆危险化学品的。

不具有本法第六十五条第一款、第二款规定的相关许可证件或者证明文件的单位购买剧毒化学品、易制爆危险化学品，或者个人购买剧毒化学品（属于剧毒化学品的农药除外）、易制爆危险化学品的，由公安机关没收所购买的剧毒化学品、易制爆危险化学品，可以并处5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由应急管理部门移送公安机关对主要负责人、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5日以上15日以下拘留。

使用剧毒化学品、易制爆危险化学品的单位出借或者向不具有本法第六十五条第一款、第二款规定的相关许可证件的单位转让其购买的剧毒化学品、易制爆危险化学品，或者向个人转让其购买的剧毒化学品（属于剧毒化学品的农药除外）、易制爆危险化学品的，由公安机关责令改正，没收违法所得，并处1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拒不改正的，责令停产停业整顿，由应急管理部门移送公安机关给予其主要负责人、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5日以上15日以下拘留。

第一百二十条 产生废弃危险化学品的单位未建立废弃危险化学品安全管理制度，或者未按照本法规定制定安全处置方案的，由生态环境主管部门责令限期改正，处5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逾期不改正的，责令停产停业整顿，并处1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对其主要负责人、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以1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

从事收集、贮存、处置、利用、运输废弃危险化学品经营活动的单位不具备本法或者其他法律、行政法规和国家标准或者行业标准规定的安全生产条件的，由生态环境主管部门责令停产停业整顿，处50万元以上100万元以下的罚款，对其主要负责人、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2万元以上10万元下的罚款；未停产停业整顿或者经停产停业整顿仍不具备安全生产条件的，由生态环境主管部门报请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按照国务院规定的规定权力予以关闭，有关部门应当依法吊销其有关证照。

第一百二十一条 未依法取得危险货物道路、水路、铁路、航空运输许可或者备案，从事危险化学品道路运输、水路运输、铁路运输、航空运输的，分别依照有关道路运输、水路运输的法律、行政法规的规定处罚。

第一百二十二条 有下列情形之一的，由交通运输主管部门责令改正，处10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对主要负责人、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以1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拒不改正的，责令停产停业整顿；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一）危险化学品道路运输企业、水路运输企业的驾驶人员、船员、装卸管理人员、押运人员、申报人员、集装箱装箱现场检查员未取得从业资格上岗作业的；

（二）运输危险化学品，未根据危险化学品的危险特性采取相应的安全防护措施，或者未配备必要的防护用品和应急救援器材的；

（三）使用未依法取得危险货物适装证书的船舶，通过内河运输危险化学品的；

（四）通过内河运输危险化学品的承运人违反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对单船运输的危险化学品数量的限制性规定运输危险化学品的；

（五）用于危险化学品运输作业的内河码头、泊位不符合国家有关安全规范，或者未与饮用水取水口保持国家规定的安全距离，或者未经交通运输主管部门验收合格投入使用的；

（六）托运人不向承运人说明所托运的危险化学品的种类、数量、危险特性以及发生危险情况的应急处置措施，或者未按照国家有关规定对所托运的危险化学品妥善包装并在外包装上设置相应标志的；

（七）运输危险化学品需要添加抑制剂或者稳定剂，托运人未添加或者未将有关情况告知承运人的；

（八）通过道路运输危险化学品的，充装单位未按照运输车辆的核定载质量装载危险化学品的；

（九）危险化学品道路运输承运人未通过定位系统对运营中的危险化学品运输车辆实现监测、监控或者预警的；

（十）危险化学品的装卸作业不符合安全作业标准、规程和制度，或者未在装卸管理人员的现场指挥或者监控下进行的；

（十一）承运人和充装单位未对运输车辆、罐体是否在安全技术检验有效期，或者是否安装、悬挂或者喷涂警示标志进行查核的；

（十二）危险化学品运输车辆及其罐体应当不符合国家标准要求的安全技术条件，未按照国家有关规定定期进行清洗和安全技术检验的。

第一百二十三条 有下列情形之一的，由交通运输主管部门责令改正，处20万元以上30万元以下的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对主要负责人、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以1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拒不改正的，责令停产停业整顿；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一）委托未依法取得危险货物道路运输许可、危险货物水路运输许可的企业承运危险化学品的；

（二）通过内河封闭水域运输剧毒化学品以及国家规定禁止通过内河运输的其他危险化学品的；

（三）通过内河运输国家规定禁止通过内河运输的剧毒化学品以及其他危险化学品的；

（四）在托运的普通货物中夹带危险化学品，或者将危险化学品谎报或者匿报为普通货物托运的。

委托未依法取得危险货物铁路、航空运输许可或者备案的企业承运危险化学品的，分别由铁路监管部门、民航部门依照本条规定实施处罚。

个人携带危险化学品乘坐公共交通工具的，由相关行业主管部门处500元以上1万元以下的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一百二十四条 有下列情形之一的，由公安机关责令改正，处10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以1万元以上2万元以下的罚款；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一）超过运输车辆的核定载质量装载危险化学品的；

（二）使用安全技术条件不符合国家标准要求的车辆运输危险化学品的；

（三）运输危险化学品的车辆未经公安机关批准进入危险化学品运输车辆限制通行的区域的；

（四）未取得剧毒化学品道路运输通行证，通过道路运输剧毒化学品的。

在邮件、快件内夹带危险化学品，或者将危险化学品谎报为普通物品交寄的，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邮政企业、快递企业违法收寄危险化学品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邮政法》的规定处罚。

第一百二十五条 有下列情形之一的，由公安机关责令改正，处5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以2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

（一）危险化学品运输车辆或其罐体未安装、悬挂或者喷涂警示标志，或者警示标志不符合国家标准要求的；

（二）通过道路运输危险化学品，不配备押运人员的；

（三）运输剧毒化学品或者易制爆危险化学品途中需要较长时间停车，驾驶人员、押运人员不向当地公安机关报告的；

（四）剧毒化学品、易制爆危险化学品在道路运输途中丢失、被盗、被抢或者发生流散、泄露等情况，驾驶人员、押运人员不采取必要的警示措施和安全措施，或者不向当地公安机关报告的。

第一百二十六条 对发生交通事故负有全部责任或者主要责任的危险化学品道路运输企业，由属地县级公安机关责令消除安全隐患，未消除安全隐患的危险化学品运输车辆，禁止上道路行驶；擅自上道路行驶的，由公安机关对其主要负责人、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5日以上15日以下拘留。

第一百二十七条 有下列情形之一的，由交通运输主管部门责令改正，可以处5万元以下的罚款；拒不改正的，处5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

（一）危险化学品道路运输企业、水路运输企业未配备专职安全管理人员的；

（二）用于危险化学品运输作业的内河码头、泊位的管理单位未制定码头、泊位危险化学品事故应急救援预案，或者未为码头、泊位配备充足、有效的应急救援器材和设备的。

第一百二十八条 有下列情形之一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内河交通安全管理法律、行政法规的规定处罚：

（一）通过内河运输危险化学品的水路运输企业未制定运输船舶危险化学品事故应急预案，或者未为运输船舶配备充足、有效的应急救援器材和设备的；

（二）通过内河运输危险化学品的船舶的所有人或者经营人未取得船舶污染损害责任保险证书或者财务担保证明的；

（三）船舶载运危险化学品进出内河港口，未将有关事项事先报告海事管理机构并经其同意的；

（四）载运危险化学品的船舶在内河航行、装卸或者停泊，未悬挂专用的警示标志，或者未按照规定显示专用信号，或者未按照规定申请引航的。

未向港口行政管理部门报告并经其同意，在港口内进行危险化学品的装卸、过驳作业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港口法》的规定处罚。

第一百二十九条 伪造、变造或者出租、出借、转让危险化学品安全生产许可证、工业产品生产许可证，或者使用伪造、变造的危险化学品安全生产许可证、工业产品生产许可证的，分别依照安全生产许可证、中华人民共和国工业产品生产许可证管理法律法规的规定处罚。

伪造、变造或者出租、出借、转让本法规定的其他许可证，或者使用伪造、变造的本法规定的其他许可证的，分别由相关许可证的颁发管理机关处20万元以上30万元以下的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一百三十条 危险化学品单位发生危险化学品事故，其主要负责人不立即组织救援或者不立即向有关部门报告的，依照生产安全事故报告和调查处理法律、行政法规的规定处罚。

危险化学品单位发生危险化学品事故，造成他人人身伤害亡或者财产损失的，依法承担赔偿责任。

第一百三十一条 有关单位和个人违反本法规定、情节严重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有关部门按照国家规定对其实施加大执法频次、暂停项目审批、上调有关保险费率、行业或者职业禁入等联合惩戒措施，并向社会公示。

第一百三十二条 发生危险化学品事故或者遇到险情时，危险化学品单位作业现场带班人员、班组长和调度人员不立即下达停产撤人命令，指挥有关遇险人员撤离或者因撤离不及时导致人身伤亡事故的，对相关人员从重追究法律责任。

发生危险化学品事故，有关地方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不立即组织实施救援，或者不采取必要的应急处置措施减少事故损失，防止事故蔓延、扩大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一百三十三条 负有危险化学品安全监督管理职责的部门的工作人员，在危险化学品安全监督管理工作中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的，依法给予处分。

第十一章 附则

第一百三十四条 易制毒化学品、属于危险化学品的监控化学品、药品和农药、兽药的安全管理，依照本法的规定执行；法律、行政法规另有规定的，依照其规定。

民用爆炸物品、烟花爆竹、城镇燃气、放射性物品、核能物质、军工火炸药，以及属于国家药品标准物质的危险化学品的安全管理，不适用本法。

法律、行政法规对城镇燃气、管道运输石油、天然气的安全管理另有规定的，依照其规定。

危险化学品容器和管道属于特种设备的，其安全管理依照有关特种设备安全的法律、行政法规的规定执行。

第一百三十五条 危险化学品的进出口管理，依照有关对外贸易的法律、行政法规、规章的规定执行；进口的危险化学品的贮存、使用、经营、运输的安全管理，依照本法的规定执行。

新化学品物质环境管理登记，依照有关环境保护的法律、行政法规、规章的规定执行。危险化学品鉴定、分类、登记和新化学物质环境管理登记，按照国家有关规定收取费用。

第一百三十六条 本法所称重大危险源，是指长期地或者临时地生产、贮存、使用和经营危险化学品，且危险化学品的数量等于或者超过临界量的单元（包括场所和设施）。

第一百三十七条 本法自20 年 月 日起施行。

1. 중국에서 “단위(单位)”는 기관, 단체, 기구, 기업 등 비자연인의 법적 실체를 가리킴. [↑](#footnote-ref-1)
2. 정부가 국유자산으로 설립하는 교육, 과학기술, 문화, 위생 등 사회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 또는 법인 실체임. [↑](#footnote-ref-2)